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

2023. 4.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사업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 4

(1)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 미실시(징계) ····· 5

(2)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업무 등 소홀(시정) ····· 17

(3) 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33

(4) 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37

(5)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42

(6)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55

(7)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61

(8)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시정) ····· 65

(9)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68

(10)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72

(11) 원예시설 지원사업 공시 소홀(주의) ····· 76

(12)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험료 정산 소홀(주의) … 82

(13)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 …… 85

(14)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 소홀(주의) …… 88

(15)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시정) …… 95

(16)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100

(17)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106

(18)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시정) …… 114

(19)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시정) … 117

(20) 채소형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시정) …… 122

(21) 도시농업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시정) …… 127

(22) 텃밭정원 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135

(23)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41

(24)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147

(25)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개선) …… 151

(26)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주의) …… 154

(2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158

(28)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162

(29)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미사용(주의) …… 169

(30)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74

(31)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주의) ····· 180

(32)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주의) ····· 18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특정감사는 부산광역시(부서 1, 직속기관 1)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시비, 구·군비)이 지원된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반에서의 부정수급 근절, 재정 누수 예방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에 앞서 감사원 등 타 기관 감사사례, 관련 언론보도, 주요 학술지 등을 참고하였으며, 2022. 9. 19.부터 11. 15.까지 40일간 감사 인원 6명(외부전문가 1명 별도)을 투입하여 권역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 결과 처리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기관과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 1. 11. 자체처분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고 2023. 2. 21.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Ⅱ. 감사대상사업 현황

1. 사업 현황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은 2019년 ~ 2021년 기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구·군비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540여 건[1]의 민간보조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을 추진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개인, 단체 등)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국비, 자부담 등 재원을 바탕으로 3년간 총 55,209,296천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2. 재원별 현황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년 ~ 2021년 기간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시비 11,308,883천 원, 구·군비 8,720,266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시비 3,118,495천 원, 구·군비 3,573,219천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시비 830,000천 원, 구·군비 85,000천 원) 등 총 27,635,863천 원(시비 15,257,378천 원, 구·군비 12,378,485천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민간보조사업 지원 내역(2019 ~ 2021)

(단위: 천원)

구 분	국비	시비	구(군)비	융자	자부담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12,919,059	11,308,883	8,720,266	90,380	3,690,047	36,728,635
민간자본사업보조	2,376,863	3,118,495	3,573,219	112,367	8,161,717	17,342,661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830,000	85,000	-	73,000	1,138,000
계	15,445,922	15,257,378	12,378,485	202,747	11,924,764	**55,209,296**

자료: 사전 감사자료 재구성

1)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매칭사업 포함, 총 사업비 10,000천 원 이상 사업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 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아래 [표 2]와 같이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표 2]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징계	시정	주의	개선	회수	금액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32	1	16	14	1	15	79,100	72	1	4	67
본 처 분	32	1	16	14	1	15	79,100	72	1	4	67
현지처리	-	-	-	-	-	-	-	-		-	-

감사 결과 확인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선정	▪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지원조건(영업이력 1년 이상) 미충족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 소홀** - 사업대상 토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보완 등 조치 없이 사업을 승인 ▪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부적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 미작성·미공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 미실시** - 사업비(강사비, 재료비 등) 집행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산 미실시 ▪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 준수 조건 미부여로 사업비 과다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보조사업비 집행 소홀**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보조금분)을 사업비에서 미공제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 중요재산(드론) 사후관리기간 내 적정 사용·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미실시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 지원요건(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충족 여부 미확인, 사전 승인 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 ▪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미공시

2.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 명세: 별첨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징 계 요 구

제 목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 미실시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구는 2020년과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표 ○, 이하 “★”라 한다)에서 (사)☆(대표 ○) 및 (사)●(대표 □)와 세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구는 영유아, 고령자 등 대상 식생활 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를 상대로 2020년 사업비 총 50,000,000원(국비 25,000,000원, 구비 25,000,000원), 2021년 사업비 총 70,000,000원(국비 35,000,000원, 구비 35,000,000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교부하였다.

[표 1]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2020~2021)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세부 사업			
	사업명	수행자(대표)	수행기간	예산
2020	*** 교실	(사)☆(○)	9월 ~ 12월	10,000
	*** 교육	(사)●(□)	8월 ~ 12월	14,000
	*** 체험	(사)●(□)	8월 ~ 11월	16,000
	*** 식단	(사)☆(○)	10월 ~ 12월	10,000
2021	*** 교실	(사)☆(○)	9월 ~ 12월	10,000
	*** 교육	(사)●(□)	4월 ~ 12월	24,000
	*** 체험	(사)●(□)	6월 ~ 12월	16,000
	*** 교실	(사)☆(○)	5월 ~ 9월	10,000
	*** 스쿨	(사)☆(○)	5월 ~ 9월	10,000

자료: ◎◎구 자체수립 계획서 등 발췌

2. 임원 등 대상 강사비 집행 여부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0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달리 2021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에는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이 포함되었으며, 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단체(위탁기관 등)의 임직원, 이사 등 내부 관련자의 강사 활동에 대한 강사비 집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강사비가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검사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21년 「기본계획」 지침에 임원 등 대상 강사비 집행 불가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에서 사업수행기관 임원 등에게 부적정하게 강사비를 집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임원 대상 강사비 집행 부적정 내역(2021)

(단위: 천원)

구 분	강사명	활동내역	부적정 상세		
			소속	사유	부적정 집행액
2021	○○○	*** 교실	(사)☆	임원	720
	▲▲▲	*** 교실, *** 스쿨	(사)☆	임원	3,800
	△△△	*** 교실, *** 교실 등	(사)☆	임원	2,620
	▽▽▽	*** 교실, *** 스쿨	(사)☆	임원	1,340
총액					8,480

자료: ◎◎구 제출자료(사업 결과보고서 등) 재구성

그 결과 [표 2]와 같이 ★에서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사업 수행기관 (사)☆(대표 ○) 임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총 8,48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3. 강사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신설,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는 강사 활동 증빙자료로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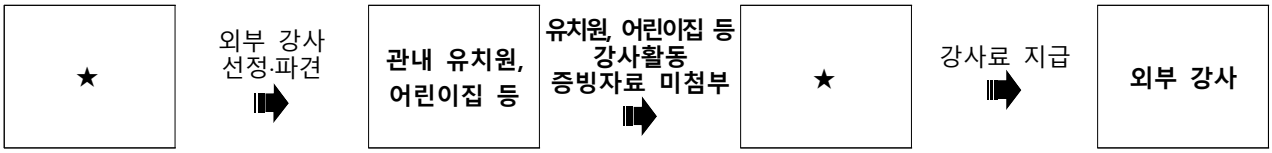
따라서 ◎◎구는 ★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2021년「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서 갖추도록 한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강사 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2. 9. 19. ~ 2022. 10. 14.) 확인 결과, 2020년 ~ 2021년 ★ 보조사업 외부 강사로 활동한 강사들은 같은 시기 부산시(♤과) 보조사업을 수행한 ♠[1](이하 “♠”라 한다)의 외부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는 2020년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구에 제출하면서 강사로부터 받은 강사비 수령증과 활동사진 일부만 첨부하였다.

[표 3] 강사비 집행 절차 부적정(2021)



1) 부산광역시(♤과) ◈ 보조사업 수행(2019년 ~ 2021년)

2021년에는 「기본계획」의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등 활동 대상 기관으로부터 강의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강사로부터 받은 강사료 수령증과 강의 관련 일부 사진만 구비하고 강의확인서는 받지 아니하는 등 「기본계획」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구(♧과)는 2020년 ~ 2021년 기간 ★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상 강사비 집행이 적정 여부에 대해 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기본계획」에 강의확인서를 증빙자료로 갖추도록 명시하는 등 사업지침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강사비 집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 보조사업 활동 강사들의 활동 기록이 동 시간대 각기 다른 2개의 장소에서 교육한 것으로 중복기재[2] 되어 있거나 타 기관 활동과 중복되는 등 강사 활동실시 여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투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보완요구)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4. 강사비 적정 단가 산정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1년 기초지자체 식생활 지원사업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르면 강사비는 [표 4]의 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강사 활동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최초 1시간에 대해 등급별로 산정한 기본 단가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등급별로 산정된 시간당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과)에서 ◎◎구(♧과)에 시달한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회계정산지침 및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송부(♤과-****호, 2021. 3. **.)” 문서에 따르면 교육 대상이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이 달라지더라도 1일 첫 시간만 최초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시간으로 강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일부 소명자료(강의확인서)상에도 활동 중복

[표 4] 강사비 예산편성 기준(2021)

등급	2021년
특별강사 - 1시간 30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150천원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시도 사전협의)
1급 강사 - 1시간 20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100천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중소기업.기관.단체의 장 -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2급 강사 - 1시간 15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50천원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민간기업, 농식품부 또는 타 부처 소속의 기관.협회.법인 등) - 중소기업체의 임원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3급 강사 - 1시간 12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30천원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강사, 프리랜서, 농업인 등 일반적인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보조강사 - 1시간 최대 8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30천원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자료: 기본계획(2021) 발췌

따라서 ◎◎구는 ★에서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과 부산시(♤과) 시달문서 등을 준수하여 활동 시간에 따라 적정 강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에서 강사 활동 시간에 따라 적정 강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에서 1시간 초과 활동의 초과시간에 대해 별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 단가로 산정하여 보조금 총 8,710천 원 상당을 강사비로 과다 지급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5. 사업비 부적정 집행 여부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7조 제7항 및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또는 거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2. 9. 19. ~ 2022. 10. 14.) 확인 결과, (사)☆(대표 ○)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의 사무실 마련 목적으로 ◎◎구 ***로**번길 **(**동) 소재 3층을 2020년 **월부터 2025년 **월까지 보증금 10,000천 원, 월 임차료 330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장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왔다.

[표 5] ◈◈◈ 육성사업 지원 내역(2021년)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사업장소	재원				주요사업
			총액	국비	시비	자부담	
(사)☆ (대표 ○)	'21. **. **. ~ '21. **. **.	◎◎구 ***로 **번길 **, *층 (**동)	60,000	25,000	25,000	10,000	- **학교 - **학교 - 농산물 및 식품판매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 ~ 2021년 기간 ★ 식생활교육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대표 ○)은 [표 5]와 같이 2021년 행정안전부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도 선정되었으며, 총 60,000,000원(국비 25,000,000원, 시비 25,000,000원, 자부담 10,000,000원)의 사업비로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 대표 ○은 [표 6-1]과 같이 2020년 ~ 2021년 기간 「기본규

정」에 따라 임직원 업체와는 계약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조사업 전부터 사용 중이던 ◎◎구 ***로**번길 **(**동) 소재 *층 사무실을 식생활 교육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임차하였다 하여 자신의 업체 (사)☆으로 보조금 총 6,30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사)☆(대표 ○)으로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별도 임대차 계약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표 6-2]와 같이 해당 사무실을 2021년 행정안전부 ◈◈◈육성사업 보조금 1,230천 원으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장소로 임차하였다 하여 자신의 업체 (사)☆으로 식생활 보조사업 보조금 2,360천 원을 중복집행하는 한편, *** 스쿨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임차 단가를 ⊙에 월 임차료로 지급하던 300천 원보다 많은 500천 원으로 과다 산정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다.

[표 6-1] 임차비 집행 부적정 내역(2020년 ~ 2021년)

<임대차 계약 작성 내역>

임 대 인	⊙ (▲)
임 차 인	(사)☆ (○)
임차목적 (용 도)	사무실
계약체결	**2020. **. **.**
계약기간	'20. **. **. ~ '25. **. **.(5년)
계 약 액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330천원
비 고	임대차계약서 기재내용 참고

◄►

소재지	◎◎구 ***로**번길 **, *층 (**동)
면 적	133.81㎡
소유자	⊙ (이사장 ▲)
- 사진생략	
- 사진생략	

◄►

<전자세금계산서상 기재 내역>

임 대 인 (공급한 자)	(사)☆ (○)
임 차 인 (공급받은자)	(사)☆ (○)
임차목적 (집행용도)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약체결	**계약 증빙자료 ×**
계약기간	확인불가
계 약 액	확인불가
비 고	<보조금 지출> '20년 1,320천 원 '21년 4,984천 원 총 6,304천 원

[표 6-2] 보조금(임차비) 중복 집행 내역(2021년)

(단위: 원)

2021년 ◈◈◈ 육성사업			부적정 사유	2021년 ★ 식생활 보조사업		
집행일	사 유	집행액		집행일	사유(운영기간)	집행액
2021-9-29	9월 임차료	330,000	**2개 보조사업에서 임차비 중복 지출**	2021-12-24	*** 스쿨 임차료 (11월 ~ 12월, 총 8회분)	1,040,000
2021-10-29	10월 임차료	275,000				
2021-11-30	11월 임차료	300,000		2021-12-24	*** 교실 (12. 09. ~ 12. 17., 총 6회)	1,320,000
2021-12-11	10월 임차료 추가	25,000				
2021-12-27	12월 임차료	300,000				
총 액		**1,230,000**		**총 액**		**2,360,00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20년 ~2021년 기간 [표 7]과 같이 「기본규정」에 따라 임직원 업체와는 계약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로그램 재료를 구입하였다 하여 자신의 업체 (사)☆(대표 ○)과 6회에 걸쳐 내부거래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총 2,601천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7] 회계처리 부적정 내역(2020~2021)

(단위: 원)

사업연도	집행 상세				부적정 사유
	집행일	집행사유	거래처(대표)	집행액	
2020	2020-11-10	*** 식단 재료비	(사)☆(○)	690,00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2020-12-14	*** 교실 재료비	(사)☆(○)	900,00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2020-12-18	평가회 회의비	♡(▽)	98,00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총 액			**1,688,000**	
2021	2021-07-28	*** 교실 재료비	(사)☆(○)	235,00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2021-08-17	*** 교실 재료비	(사)☆(○)	60,39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2021-12-24	*** 교실 재료비	(사)☆(○)	240,00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사업종료(12.17.) 후 집행
	2021-12-29	*** 스쿨	(사)☆(○)	378,030	보조단체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사업종료(12.3.) 후 집행
	총 액			**913,420**	
2년간 총액				**2,601,42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1년 사업 과정에서는 12월 3일 종료한 *** 스쿨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를 12월 29일에 집행하거나 12월 17일 종료한 *** 교실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를 12월 24일에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런데 ◎◎구(♧과)는 2020년 ~ 2021년 사업과 관련하여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또는 거래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에서 「기본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체와 내부거래하는 등 임차비 총 6,304천 원과 재료비 2,601천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재료비 일부는 사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6.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구 ◈국 ♧과 지방♣♣♣ ▣▣▣는 2021. **. **.부터 2022. **. **.까지 ♧과 ◈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정산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지방보조금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결권은 실·단·과장에게 있으며, 제4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과 @@업무의 &&사업 집행에 관한 업무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는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완료 후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사비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등 사업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전결권자(과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고, 부적정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업무담당자의 정산 미실시

그런데 ▣▣▣는 2020년 ~ 2021년 기간 ★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강사비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전결권자(과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과 달리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강사비 집행 불가 대상(임원 등), 강사 활동 증빙자료(어린이집 등의 강의확인서) 구비 등 사업비 집행 시의 보조사업자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법령 준수를 강조한 문서가 통보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조단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전년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검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정산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결권자(과장)에게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구는 ★에서 강사비 집행 불가 대상인 단체 임원 대상으로 강사

비 8,480천 원 부적정 집행, 강사비 8,710천 원 상당 과다 집행, 거래 불가한 대표 업체 등과 내부거래 등으로 8,905천 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하는 등 26,095천 원 상당의 재정(보조금)이 누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구는 ① 강사활동 중복과 관련하여 활동 내역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자료보관 미숙으로 관련 소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강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시차별 강의에 대해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 단가를 지급하는 착오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② 임원 업체와의 임차비, 재료비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규정」에 사업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차비 집행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수행 관련 조리장·체험장 공간 임차비를 집행 내역에 포함하였으나 임차 가능 시설 부족과 높은 임차비용, 사용 가능 시간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기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 집행지침 등을 숙지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번 의견과 관련하여 일부 강사 활동의 강의 장소, 강의 시간이 중복되고 소명자료로 추가 제출한 강의확인서조차 일부 활동 내역이 중복되는 등 강사비 집행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번 의견과 관련하여「기본규정」에 따라 임원 업체 등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원 업체와의 거래는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차비 집행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에 조리장·체험장 공간 임차비를 포함하였다 하여 집행 과정에서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2020년 ~ 2021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업무 태만으로 26,095천 원 상당의 재정(보조금) 누수를 초래한 담당자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강사비 부적정 집행(임원 대상 집행, 과다 산정 등) 및 사업비 부적정 집행(임차비 및 재료비) 관련 보조금 총 26,095천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하여 주시고,**(시정)**

② ◈◈◈ 육성사업 및 식생활교육 사업 보조금(임차비) 중복집행, 강사비 중복집행, 재료비 사후집행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사실관계 및 위법성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보조사업 정산업무 태만으로 26,095천 원 상당의 재정(보조금) 누수를 초래한 ▣▣▣를「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경징계)**

④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및 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정산업무 등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과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대표 ▽, 이하 "●"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1]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유아, 성인 등 대상 식생활 교육 추진 목적으로 2019년 사업비 340,000,000원(국비 170,000,00,원, 시비 170,000,000원), 2020년 사업비 280,000,000원(국비 140,000,000원, 시비 140,000,000원), 2021년 사업비 280,000,000원(국비 140,000,000원, 시비 140,000,000 원) 등 3년에 걸쳐 총 900,000,000원(국비 450,000,000원, 시비 450,000,000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 사업계획서(2019~2021)

(단위:천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비고
	사업명	사업대상(수혜자)	수행기간	예산	
2019	*** 프로그램	초등학생	3월~12월	19,350	
	*** 프로그램	유아, 초/중/고 학생	3월~12월	36,700	
	*** 프로그램	유아, 초/중/고 학생	3월~12월	31,250	
	*** 프로그램	교사, 영양(교)사	6월~9월	10,000	
	*** 프로그램	공무원, 활동가, 시민	4월, 12월	7,200	
	*** 프로그램	담당자	4월~9월	1,420	
	*** 프로그램	경로당 및 노인회관 고령자	3월~12월	18,760	
	*** 프로그램	시민, 초/중/고 학생	3월~12월	29,500	
	*** 프로그램	시민, 초/중/고 학생	3월~12월	51,665	
	*** 프로그램	유아~성인	3월~12월	81,155	

1)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식생활개선과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목적의 교육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연도	세부사업				비고
	사업명	사업대상(수혜자)	수행기간	예산	
2020	*** 프로그램	유아, 초/중/고 학생	4월~12월	59,240	
	*** 프로그램	교사, 영양(교)사	6월~9월	10,000	
	*** 프로그램	경로당 및 노인회관 고령자	4월~12월	21,200	
	*** 프로그램	시민, 초/중/고 학생	4월~12월	68,640	
	*** 프로그램	시민, 초/중/고 학생	4월~12월	40,920	
	*** 프로그램	유아~성인	4월~12월	35,000	
2021	*** 프로그램	유아/초/중/고 학생/가족	3월~12월	42,000	
	*** 프로그램	교사, 영양(교)사, 조리사	3월~12월	6,000	
	*** 프로그램	다문화, 고령자/가족	3월~12월	24,130	
	*** 프로그램	초/중/고 학생/가족/부산시민	3월~12월	45,150	
	*** 프로그램	유아~성인/가족	3월~12월	42,000	
	*** 프로그램	부산시민	3월~12월	67,320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는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기본계획(2019년～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달)」에 따라 [표 1]의 연간 세부 사업 실행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과에 제출하였다.

2.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기본계획(2019년～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달)」(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정·공모 선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사업 위탁기관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비 외 인건비와 운영비(위탁사업비의 15% ～ 18%)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보조사업 방식으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추진 시에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확인·검토하여 보조사업자가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표 2]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2019~2021)

사업연도	항목	비목	비고
2019	인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지자체가 지정·공모 선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사업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비의 최대 15%까지 그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계획에 명시
	사업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송금수수료, 재료비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기타	기타(체험비, 체험학습 재료비, 직접사업비)	
2020	인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지자체가 지정·공모 선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사업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비의 최대 15%까지 그 일부를 사업관리비(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계획에 명시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송금수수료	
	기타	기타(체험비, 체험학습 재료비, 직접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위탁사업비의 15% 이내)	
2021	인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지자체가 지정·공모 선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사업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비의 최대 18%까지 그 일부를 사업관리비(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계획에 명시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인쇄비, 홍보비, 재료구입비, 임차비, 송금수수료, 기타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위탁사업비의 18% 이내)	

자료: 자지체 식생활교육 사업 기본계획(2019~2021) 발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팀)는 2019년 ~ 2020년 기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2019년~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달)」을 면밀히 확인·검토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지정이나 위탁사업 수행 시에만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의 최대 15%)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표에 운영비(2019년 50,000천 원, 2020년 42,000천 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경비 편성 목적 및 집행용도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검토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교부하였다.

그 결과 2019년 ~ 2020년 기간 ●에서 사업계획서상 운영비에 편성된 사업예산 92,000천 원 중 83,256천 원 상당을 사업비가 아닌 상근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임원 등 대상 강사비 집행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 ~ 2020년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르면 상근자에게는 강사비 지급이 불가하고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해 1인당 최대 10회까지만 강사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21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근자를 포함하여 단체 임직원, 담당 공무원 등 사업수행 직접 관련자에게 지자체 사전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강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 강사 활동 관련 사전 신고 대상자들의 사전 신고 여부 및 최대 활동 횟수 준수 여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강사비를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팀)는 2019년 ~ 2021년 기간 사전 신고 대상 강사들의 사전 신고 여부 및 최대 활동 횟수 준수 여부, 임원 등 대상으로 부적정하게 강사비를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019년 ~ 2020년 기간 ●에서 ♠과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단체 임원인 ♧ 외 11명과 참여단체 ♤과 ☆ 임원 ▲, △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지급과정에서 최대 활동 횟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4. 강사비 중복집행 등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신설,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는 강사 활동 증빙자료로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하반기(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본계획」 비대면 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 프로그램” 비대면 교육 차원으로 실시하는 독거노인 등 대상 꾸러미·키트 지원 활동은 강사가 개별 방문하여 생활 속 지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강사비는 수혜자 30명을 기준으로 수혜자 리스트 및 수령증 등을 증빙하는 때에 주강사비(1시간 기준)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꾸러미·키트 수령증 등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서 갖추도록 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강사가 활동 대상 기관에서 적정하게 활동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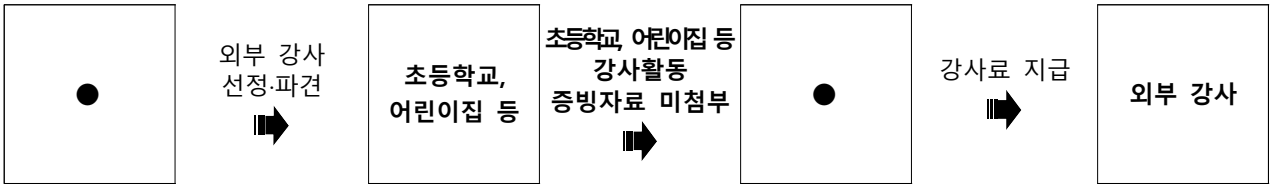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2. 9. 19. ~ 2022. 11. 15.) 확인 결과, 2019년 ~ 2021년 기간 ●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한 강사 중 일부는 해당 기간 구(♧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2](이하 “ ★”라 한다)의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2) ♥♥구(◆과) 식생활교육 보조사업 수행(2020년 ~ 2021년)

2019년 ~ 2021년 기간 ●는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등 활동 대상 기관으로부터 강의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강사로부터 받은 강사료 수령증과 일부 강의 관련 사진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강의확인서는 받지 아니하는 등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강사비 집행 절차 부적정(2019~2021)



그런데 ♠과(◎팀)는 ●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상 강의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강사비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 강사들의 활동 기록이 동 시간대 각기 2개의 장소에서 식생활교육 강의를 한 것으로 중복기재, 활동 개시 시각·종료 시각 미기재, 강의일시·장소·프로그램명 중복기재, 타 기관(장소) 활동과 중복, 독거노인 대상 꾸러미 지원 활동 구비자료(수혜 인원 리스트 및 꾸러미 수령증) 미첨부 등 강사 활동 실시 여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보완요구)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5. 강사비 적정 단가 산정 확인 등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에 따르면 강사비를 집행할 때에는 강의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표 4]의 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사 활동에 대한 시간당 강사비 단가는 최초 1시간에 대해 등급별로 산정한 기본 단가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등급별로 산정된 시간당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강사비 예산편성 기준(2019~2021)

등급	2019년 ~ 2020년	2021년
특별강사 - 1시간 300천원 - 초과 매시간당 150천원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시도 사전협의)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시도 사전협의)
1급 강사 - 1시간 200천원 - 초과 매시간당 100천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중소기업.기관.단체의 장 -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2급 강사 - 1시간 150천원 - 초과 매시간당 50천원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민간기업, 농식품부 또는 타 부처 소속의 기관.협회.법인 등) - 중소기업체의 임원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3급 강사 - 1시간 130천원(120천원*) - 초과 매시간당 30천원 *2021년 단가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강사, 프리랜서, 농업인 등 일반적인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보조강사 - 1시간 최대 80천원 - 초과 시간당 최대 30천원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자료: 기본규정 발췌

특히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회계정산지침 및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송부(◇과-****, 2021. 3. **.)” 문서를 부산시(♠과)에 시달하여 「보조금법」,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붙임 자료를 통해 교육 대상이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이 달라지더라도 1일 첫 시간만 최초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시간으로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과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회계정산지침 및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송부(♠과-****, 2021. 3. **.)” 문서를 ●에 시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는 ●에서 「기본계획」 지원금 회계정산 지침과 농림축산식품부 시달문서 등을 준수하여 활동 시간에 따른 적정 강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팀)는 ●에서 강사 활동 시간에 따라 적정 강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는 1시간 초과 활동의 초과시간에 대해 별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1시간 기본 단가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2020년 ~ 2021년 "*** 프로그램" 관련 독거노인 등 꾸러미·키트 지원 활동의 경우에는 주강사에게만 강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보조강사에게 강사비를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2만 원의 기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3급 강사에 대해 13만 원의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6. 임원 업체와의 부적정 거래(임차료 및 재료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7조 제7항 및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회계정산지침 및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송부(◇과-****, 2021. 3. **.)" 문서를 부산시(♠과)에 시달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과에서 ●에 시달한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회계정산지침 및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송부(♠과-****, 2021. 3. **.)"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과는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또는 거래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팀)는 2019년 ~ 2021년 기간 ●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또는 거래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019년 ~ 2020년 기간 ●에서 「기본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식생활 보조사업 프로그램 관련 재료비 구입 및 장소 임차 등 명목으로 ●대표(공동대표) ♧이 운영하는 @, 이사 ⊙이 운영하는 #, 이사 ○이 운영하는 (사)☆과 거래하여 2019년 2,213천 원(15회), 2020년 5,317천 원(18회) 등 2년간 33회에 걸쳐 보조금 총 7,530천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7. 사업계획 검토 및 재위탁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사업비 부당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 ~ 2021년 기간 ♠과는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국비 및 지방비(시비)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고 ●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본규정」 제57조 제7항 및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식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 수행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자 지방보조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재위탁을 승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취지에 따라 재위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위탁 승인 시에도 「기본계획」, 「기본규정」 등 회계 관계 법령 취지에 따라 수탁기관과 ● 임직원 운영 업체·단체 간 계약 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는 2019년과 2020년 식생활교육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과에 식생활교육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문서를 제출하였다.

[표 5] 세부사업 제3자 재위탁(재교부) 내역(2019 ~ 2020)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기관수	사업예산		수행방식	비 고
				금액	산출내역		
2019	**** 프로그램	초등학생	3	19,350	- 민간이전 15,000 - 인건비 4,050 - 운영비 30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2개소 지원
	**** 프로그램	유아 및 초·중·고생	20	36,700	- 민간이전 36,000 - 운영비 70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18개소 지원
	**** 프로그램	유아 및 초·중·고생	10	31,250	- 민간이전 20,000 - 인건비 10,800 - 운영비 45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10개소 지원
	**** 프로그램	교사, 영양교사	-	10,000	- 사업수행비 10,00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1개소 지원
총액				97,300			
2020	**** 프로그램	유아 및 초·중·고생	35	59,240	- 민간이전 37,000 - 인건비 17,400 - 운영비 4,84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17개소 지원
	**** 프로그램	교사, 영양교사	-	10,000	- 사업수행비 10,000	재위탁 (제3자 재교부)	최종 1개소 지원
총액				69,240			

자료: ♠♠♠ 제출자료 등 재구성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 문서에는 [표 5]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교실 식생활교육 학습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에서 제3의 기관에 재위탁(재교부)하여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과(◎팀)는 재위탁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 「기본규정」 및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 등 회계 관계 법령 취지에 따라 수탁기관과 ● 임직원 업체·단체 간 계약 또는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산 자료 검사 등을 통한 적정 추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재위탁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내역(2019 ~ 2020)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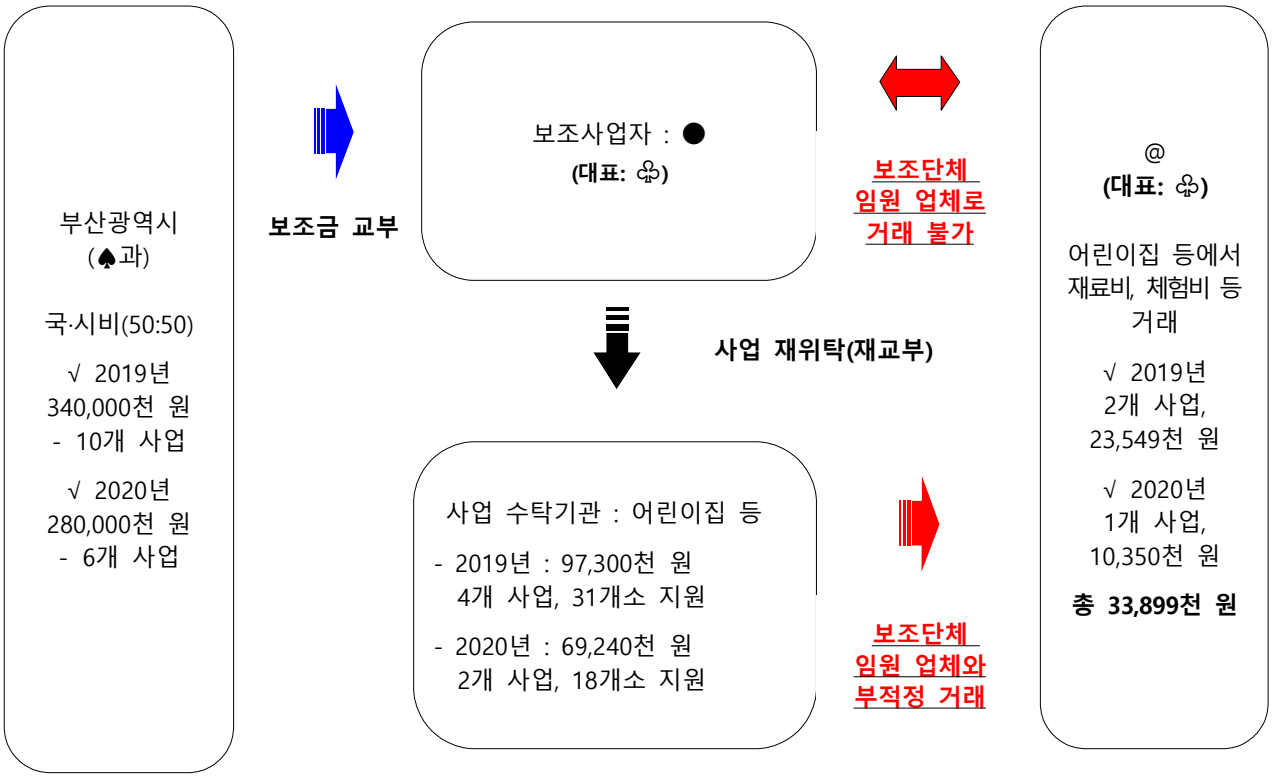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 수탁기관	지원내용	지원액	활동장소	부적정 사유
2019	*** 프로그램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2,880	@	정산자료 미검사
		**유치원	체험비	3,000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460	@	정산자료 미검사
		**초등학교	체험비, 교통비	3,000	@	정산자료 미검사
		**유치원	체험비	2,340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268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351	&농원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2,100	&농원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1,170	@	정산자료 미검사
		**초등학교	체험비, 교통비	2,880	▼농장	정산자료 미검사
		**초등학교	체험비, 교통비	2,430	$마을	정산자료 미검사
		**중학교	체험비, 교통비	1,220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3,000	@	정산자료 미검사
		**초등학교	체험비, 교통비	2,080	&농원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710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1,298	&농원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800	@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590	&농원	정산자료 미검사
	*** 프로그램	**어린이집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계			36,557			
2020	*** 프로그램	**어린이집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고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어린이집	학교지원	2,000	텃밭, 교실	정산자료 미검사
		**초등학교	체험꾸러미	2,010	**초등학교	정산자료 미검사
		**아동센터	체험꾸러미	570	**아동센터	정산자료 미검사
		**아동센터	체험꾸러미	300	**아동센터	정산자료 미검사
	*** 프로그램	**대	사업수행비	5,022.5	**대	정산자료 미검사
계			17,903			
2년 총액			54,460			

자료: ♠♠♠ 제출자료 등 재구성

그 결과 [표 6]과 같이 어린이집 등이 수탁받았던 2019년 “*** 프로그램” 운영 사업, “***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2020년 “*** 프로그램” 운영 사업, “*** 프로그램” 사업의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일체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영수증과 같은 개별 집행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3] 2년에 걸쳐 집행한 보조금 54,460천 원 상당에 대한 정산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규정」 등 회계 관계 법령 취지에 따라 수탁기관과 ● 임직원 운영 업체·단체 간 계약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표 7-1], [표 7-2]와 같이 2019년 ~ 2020년 기간 동안 어린이집 등 20개 수탁기관에서 당초 보조사업에서는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었던 ● 공동대표 운영 업체(@)와 거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7-1] 재위탁 사업 회계처리 흐름



자료: ● 제출자료 등 재구성

3) 감사기간 증빙자료 추가 소명함

[표 7-2] 재위탁 기관 & 보조단체 임원 운영업체 간 거래 내역(2019 ~ 2020)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 수탁기관	집행사유	집행액	거래처	부적정 사유
2019	*** 프로그램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2,880	@	● 임원 (♧) 운영 업체와 거래
		**유치원	체험비	3,000	@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460	@	
		**초등학교	체험비, 교통비	3,000	@	
		**유치원	체험비	2,340	@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268	@	
		**어린이집	체험비	1,170	@	
		**중학교	체험비, 교통비	1,220	@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3,000	@	
		**어린이집	체험비, 교통비	1,710	@	
		**어린이집	체험비	800	@	
	*** 프로그램	**어린이집	학교지원	800	@	
		**어린이집	학교지원	901	@	
총액			13건, 23,549			
2020	*** 프로그램	**어린이집	체험꾸러미	2,250	@	● 임원 (♧) 운영 업체와 거래
		**어린이집	체험꾸러미	2,820	@	
		**어린이집	체험꾸러미	960	@	
		**어린이집	체험꾸러미	1,440	@	
		**초등학교	체험꾸러미	2,010	@	
		**아동센터	체험꾸러미	570	@	
		**아동센터	체험꾸러미	300	@	
총액			7건, 10,350			
2년 총액			20건, 33,899			

자료: ● 제출자료 등 재구성

8. 보조사업 정산업무 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보조금법」제27조, 제28조 및「지방보조금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규정」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운영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위탁할 수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업무의 전결권은 과장에게 있으며, 별표에 따르면 ♠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업무 중 일반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팀)는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사비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전결권자(과장)의 결재를 득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공고 및 사업비 편성·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재위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상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팀)는 상기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에서 수행한 보조사업 실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계처리가 부적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결권자(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공고 및 사업비 편성·집행 관리와 재위탁 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에서 임원 등 강의 활동 사전 미신고, 최대 활동 횟수 초과 강사비 집행, 강사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 미비, 강사비 단가 과다 산정, 강사비 지급 대상이 아닌 보조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거래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 업체와 거래(7,530천 원), 수탁기관과 보조단체 임원 업체와의 부당 거래에 대해 시정 등 조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공고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소홀로 보조사업비가 상근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과는 ①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등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사업위탁기관에 대해 위탁사업비에서 일정 비율 규모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인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② 사업계획 검토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사업비 부당집행 건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③ 강사비 중복집행 정산 소홀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정산 검토 과정에서 강의확인서, 활동보고서 등 첨부 자료를 최대한 검토하였으나 이 부분이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④ 임원 업체와의 부당 거래(임차료 및 재료비) 정산 소홀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정산 검토 과정에서 지출 자료와 사업 추진 내용 위주로 검사하여 임원 업체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번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목적, 관련 법령, 권한 등이 대행사업과는 다른 점 ②번 의견과 관련하여「기본계획」에 따라 상기 사업은 지자체 직접 수행이 원칙이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권 또한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보조사업자의 사업 재위탁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 ④번 의견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인은「기본규정」,「기본계획」지원금 회계정산 지침 등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숙지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과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과에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건별로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건은 불인정 조치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 외 부적정 사

항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해석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고자 한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강사비 부적정 집행액(미지급 대상 지급, 과다 산정 등)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액(7,530천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하여 주시고,(**시정**)

② 소명되지 않는 강사비 중복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사실관계 및 위법성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및 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ㅁㅁ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ㅁㅁ구

내 용

1. 업무 개요

ㅁㅁ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법」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일환으로 ♣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ㅁㅁ구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9년 사업비 총 83,600,000원(시비 33,440,000원, 구비 33,440,000원, 자부담 16,720,000원), 2020년 사업비 총 155,000,000원(시비 30,000,000원, 구비 30,000,000원, 자부담 95,000,000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계약법령 준수 조건 미부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신설,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예규, 2021. 1. 1. 시행, 舊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병합)」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입찰 및 적격심사 과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며 이때 낙찰하한율[4]은 84.245%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19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표 1] ♣ 장비 구매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구매 내역			계약법령에 따른 적정 집행액	예산절감액
		구매처	집행내용	집행액		
2019	▤▤구 ♣	♣	로더(2대)	83,600	70,428 (84.245%)	△13,172

※ 자료 : ▤▤구 감사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에서는 [표 1]과 같이 로더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여 구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개입찰(낙찰하한율 적용)로 구매하였을 때보다 13,172천 원의 보조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였다.

3. 중요재산 관리 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통과점수(85점)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율

「지방보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5]에 대해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공시 기간[6]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자체 중량 2톤 이상 로더[7]는 관할기관에 등록한 후에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보조사업자인 ♣에서 구매한 로더 등 중요재산의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보고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장비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지방보조금법」 제13조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 2] ♣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내역

사업연도	장비 상세		부적정 사유
	보조사업자	장비명(규격)	
2019	▤▤구 ♣	로더(4톤 초과)	취득·변동현황 홈페이지 미공시, 확인·점검 미실시
2020		결속기	

자료: ▤▤구 감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구(♤과)는 2019년 ~ 2020년 기간 [표 2]와 같이 ♣에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볏짚 결속기와 로더를 구매하였음에도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5)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북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6)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10년), 항공기(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5년)
7)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충량 2톤 이상인 것(차체굴적식 조향장치가 있는 중량 4톤 미만은 제외)

[표 3] 건설기계 취득·관리 부적정 내역

사업연도	장비 상세				부적정 사유
	보조사업자	관리자(소유자)	장비(규격)	건설기계 등록여부	
2019	▤▤ ♣	◎(관리자)	로더(4톤 초과)	미등록	관할기관 등록 여부 확인 소홀
		◐(관리자)	로더(4톤 초과)	미등록	

자료: ▤▤구 감사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2019년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4톤 초과 로더를 구매하였음에도 관할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로더 2대가 미등록 상태로 관리되는 등 보조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확인·점검하고,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공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중요재산(로더)을「지방보조금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 조건에 지방계약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비가 적정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④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훈계 및 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축산법」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일환으로 ♣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9년 사업비 총 35,000,000원(시비 12,250,000원, 군비 12,2500,000원, 자부담 10,500,000원), 2020년 사업비 총 97,500,000원(시비 30,000,000원, 군비 30,000,000원, 자부담 37,500,000원), 2021년 사업비 총 63,580,000원(군비 30,000,000원, 자부담 33,580,000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계약법령 준수 조건 미부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신설,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예규, 2021. 1. 1. 시행, 舊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병합)」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입찰 및 적격심사 과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며 이때 낙찰하한율[1]은 84.245%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의 견적을 공고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낙찰률(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2019년 ~ 2020년 ♣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에 조사료(볏짚) 절단기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매 지원 목적으로 각각 24,500천 원, 60,000천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표 1] ♣ 장비 구매 내역(2019 ~ 2020)

(단위: 천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구매 내역			계약법령에 따른 적정 집행액	예산절감액
		구매처	집행내용	집행액		
2019	◈◈군 ♣	◉	볏짚결속기 (11대)	38,500	33,880 (88%)	△4,620
2020	◈◈군 ♣	◈	농업용 동력 운반차(25대)	97,500	82,138 (84.245%)	△15,362

자료: ◈◈군 감사자료 재구성

1)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통과점수(85점)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율

그 결과 ♣에서는 [표 1]과 같이 볏짚결속기 및 농업용 동력 운반차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여 구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개입찰(낙찰하한율 적용)또는 2인 견적 수의계약(최저낙찰률 적용)으로 구매하였을 때보다 19,982천 원의 보조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였다.

3. 중요재산 관리 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2]에 대해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공시 기간[3]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2019 ~ 2021년 보조사업 추진하면서 "♣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득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중요재산 관리 계획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1톤 이상 굴착기[4]는 관할기관에 등록한 후에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에서 구매한 미니굴착기 등 중요재산의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보고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 장비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지방보조금법」 제13조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북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3)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10년), 항공기(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5년)
4)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 2] ♣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내역

사업연도	장비 상세		부적정 사유
	보조사업자	장비명	
2019	영농조합법인 ♣♣♣	볏짚 결속기(11대)	취득·변동현황 홈페이지 미공시, 확인·점검 미실시
2020		농업용 동력운반차(25대)	
2021		미니 굴착기(2대)	

자료: ◈◈군 감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군($과)은 2019년 ~ 2021년 기간 [표 2]와 같이 ♣에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볏짚 결속기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미니 굴착기를 구매하였음에도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건설기계 취득·관리 부적정 내역

사업연도	장비 상세				부적정 사유
	보조사업자	관리자(소유자)	장비(규격)	건설기계 등록여부	
2021	◈◈ ♣	◎(소유자)	미니굴착기(2톤 초과)	등록	적정 소유 여부 확인 소홀 (보조사업자≠소유자)
		▣(소유자)	미니굴착기(2톤 초과)	등록	

자료: ◈◈군 감사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2021년 ♣에서 구매한 2톤 초과 미니 굴착기가 보조사업자인 ◈◈군 ♣ 명의로 적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군 "♣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달리 ♣에서 소유하여야 할 미니 굴착기 2대를 ♣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의 채권·채무 등에 따른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이에 대해 등록 대상 장비의 소유권을 ♣으로 변경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확인·점검하고,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공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중요재산(미니 굴착기)을「지방보조금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 조건에 지방계약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비가 적정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④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소년 승마단 지원을 위해 [표 1]과 같이 2021년 ♣을 대상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비 총 80,000,000원(국비 40,000,000, 시비 20,000,000, 군비 20,000,000)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다.

[표 1] 2021년 ◐◐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소계	국비(50%)	시비(25%)	군비(25%)	
2021	♣ (대표: ■)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40,000	20,000	20,000	자부담 없음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021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에게 말 구입비, 승마용품 구입비, 승마단 운영경비(강습비, 대회참가비 등)의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대표 ■는 2020년 1월「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하고, 같은 해인 2020년 6월에 "2021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하 "창단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2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말 구입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및 구「지방재정법(2021. 7. 1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및「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의 통지)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대표 ■는 창단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말 5필(마명 ①A, ②B, ③C, ④D, ⑤E)을 총 29,350천 원에 구매하고,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과)에 제출하였다.

그런데「말산업 육성법」제7조[1] 및「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2]에 의한 말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정보포털(호스피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①A와 ②B의 소유일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일(2021. 4. 6.) 이전인 것이 확인 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 자료에서 'A'와 'B'의 구매일을 매매계약서 상 날짜인 2021년 2월 22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말산업정보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A'의 소유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이는 매매계약서상의 날짜보다 1년 이상 이전이다. 또 'B'의 소유일은 2020년 11월 1일로 이 또한 매매계약 날짜인 2021년 2월 22일보다 이전인 것이 확인된다.

[표 2] 보조사업비로 지급한 말 구매 내역

(단위: 천원)

마명	보조금 정산 자료				소유일자 (말산업정보포털*)	비고
	용도	구매일자	금액	증빙방법		
합 계			29,350			
①A	대회용	2021. 2. 22.	10,000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 1. 1.	(매도자: ◇)
②B	대회용	2021. 2. 22.	10,000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 11. 1.	(매도자: ◇)
③C	훈련용	2021. 1. 27.	3,300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1. 1. 29.	(매도자: ▽)
④D	훈련용	2021. 1. 27.	3,300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1. 1. 29.	(매도자: ▽)
⑤E	훈련용	2021. 1. 27.	2,750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21. 1. 29.	(매도자: ▽)

주: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 :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1)「말산업육성법」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조(말의 등록기관)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창단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이미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조사업자가 ◐◐군에 제출한 각종 신고 및 신청서류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할 때에는「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기관(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0일자로 보조사업자인 ■가 ◐◐군에 제출한 a.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A'를 ■ 본인 소유로 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2020년 6월 26일에 제출한 b.유소년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에도 본인의 승마시설에 등록된 말 현황으로 'A'를 첨부하였다.

또한, 창단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제출한 c.유소년승마단 창단 보조금 지원신청서에도 'A'뿐만 아니라 'B' 또한 보조사업자 본인의 소유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표 3] 보조사업자가 소유한 말로 ◐◐군에 신고한 자료 현황

제출서류	제출일자	목적	말소유 현황
a.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2020. 2. 20.	승마시설 대표자 변경	A 소유
b. 2021년 유소년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2020. 6. 26.	보조사업 신청	A 소유
c. 2021년 유소년승마단 창단 보조금 지원신청서	2021. 2. 16.	보조금 지원신청	A, B 소유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 내용과 같이 보조사업자인 ♣ 대표 ■는 'A'와 'B'를 보조사업 수행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21년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을 통해 말을 구입했다고 하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전에 소유한 말 구입비 20,000천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미 소유한 말 구매대금을 창단 지원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신청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3. 승마 강습비 집행 증빙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실적보고)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6조(정산검사)에서는 군수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군은 실적보고서로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조사업자인 ♣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의 강습비로 [표 4]와 같이 일인당 주 n회 씩 유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연간 1,396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출석부를 증빙자료로 41,880천원(강습 1회 당 3만원(정액 지급))을 정산하여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였다.

[표 4] 유소년승마단 단원 현황

연번	성명	소속(소재지)	학년 (2021년)	참여요일	강습시간	강습횟수	비고
1	AA	**초등학교(해운대구 **동)	5	화,목	11시	103	주 2회
2	BB	**초등학교(해운대구 **동)	4	화,목	11시	103	주 2회
3	CC	**초등학교(북구 **동)	3	화	10시	52	주 1회
4	DD	**초등학교(해운대구 **동)	5	화,목	14시	104	주 2회
5	EE	**중학교(금정구 **동)	2	수,금	15시	103	주 2회
6	FF	**초등학교(기장군 **읍)	3	토,일	15시	104	주 2회
7	GG	**초등학교(해운대구 **동)	4	일	10시	26	2주 1회
8	HH	**초등학교(해운대구 **동)	2	토,일	11시	104	주 2회
9	II	**초등학교(연제구 **동)	3	토,일	14시	104	주 2회
10	JJ	**초등학교(연제구 **동)	6	일	10시	52	주 1회
11	KK	**중학교(기장군 **읍)	1	수	16시	26	2주 1회
12	LL	**중학교(기장군 **읍)	1	토,일	15시	104	주 2회
13	MM	**중학교(기장군 **읍)	2	토,일	9시	104	(선수) 주 2회
14	NN	**초등학교(기장군 **읍)	3	토	9시	52	(선수) 주 1회
15	OO	**중학교(기장군 **읍)	2	수,토,일	11시(수) 14시(토,일)	155	(선수) 주 3회
16	PP	**초등학교(서구 **동)	4	토, 일	16시	104	(선수) 주 2회
17	QQ	**초등학교(부산진구 **동)	6	수,토,일	16시(수) 17시(토,일)	155	(선수) 주 3회
18	RR	**초등학교(수영구 **동)	3	금,토,일	11시(금) 16시(토,일)	156	(선수) 주 3회
19	SS	**초등학교(동래구 **동)	4	토,일	10시	97	(선수) 주 2회
20	TT	**초등학교(동래구 **동)	5	화,수,금	15시(화) 14시(수,금)	155	(선수) 주 2회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승마강습 출석부를 검토해 본 결과, 강습시간이 평일인 단원이 다수인 것을 확인, 승마 강습을 받았다면 동일 시간에 학교수업에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승마강습을 받은 시간의 학교 수업 출석 여부를 [표 5]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5] 유소년 승마단원 강습 및 학교 출결 현황(2021년)

성명	승마강습 참여 현황			횟수	학교 출결현황			승마강습 부정횟수	비고
	요일		시간		출석여부	횟수	제외* (방학 공휴일 등)		
합 계				**931**		**537**	**394**	**347**	
AA (초등 5학년)	화,목	오전	11시	103	학교출석	81	22	81	
BB (초등 4학년)	화,목		11시	103	학교출석	81	22	81	
CC (초등 3학년)	화		10시	52	학교출석	41	11	41	
OO (중등 2학년)	수,토,일		(수) 11시 (토,일) 14시	155	학교출석	35	120	35	
RR (초등 3학년)	금,토,일		(금) 11시 (토,일) 16시	156	학교출석	38	118	38	
DD (초등 5학년)	화,목	오후	14시	104	학교출석	79	25	-	※ 하교시간 - 13:35
EE (중등 2학년)	수,금		15시	103	학교출석	71	32	71	※ 하교시간 - 15:35
TT (초등 5학년)	화,수,금		(화) 15시 (수,금) 14시	155	학교출석	111	44	-	※ 하교시간 (화,금) 13:20 (수) 13:10

주: 학교 출결현황은 학사일정 상 학교 수업이 있는 기간을 대상으로 함(방학, 명절, 토요일, 공휴일 등 제외)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승마강습이 평일 오전에 있는 단원 AA, BB, CC, OO, RR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출석부에는 매주 승마강습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출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업이 있는 날은 승마강습이 아닌 학교 수업에 출석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15시에 승마강습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EE의 경우에도, 학교 종료 시간이 15시 35분으로 확인되어 해당 승마강습 시간에 참여가 불가하였고, 강습일정에 맞추어 매주 정기적으로 학교 수업에 결석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승마강습 출석일과 학교수업일이 중복되어 출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강습 횟수는 총 347회이며 이는 승마강습비 10,410,000원에 해당된다.

또한 제출된 출석부가 단원이 서명한 출석부를 복사하여 날짜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작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참여하지 않은 단원의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군에 제출하여 강습비 10,410,000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았고, ◐◐군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실제 강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실적보고서를 인정처리하여 보조금액이 정산·확정되었다.

4. 물품구입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의 통지)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고, ◐◐군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표 6]과 같이 말과 승마용품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021.4.6.) 전에 구매하면서, 본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A계좌(●, ***-****-****- **)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창단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에는 또다른 계좌를(●, ***-****-****-**) 보조금 전용 계정(B계좌)으로 설정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교부 결정 전에 이미 구매하여 거래처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구매대금은 자신의 또 다른 계좌인 C계좌(●, ***-****-****-**)로 인출하였다.

[표 6] 보조사업자의 물품 구입비 집행 현황

집행내역	거래처	이체일자 (A계좌)	구매대금 (단위: 원)	이체일자 (B계좌)			비고
합 계			38,512,200				
말 구입(3필)	◉	2021. 1. 26.	9,350,000	2021. 4. 14.	→	C계좌	매매계약 (2021.1.27.)
승마 용품 구입-ⓐ	◈	2021. 1. 11.	6,993,000	2021. 4. 14.			세금계산서 (2021.1.11.)
승마 용품 구입-ⓑ	◈	2021. 2. 1.	2,169,200	2021. 4. 15.			세금계산서 (2021.2.1.)
말 구입(2필)	◇	2021. 2. 22.	20,000,000	2021. 4. 15.			매매계약 (2021.2.22.)

주: 1. A계좌 : 물품 구매대금 지급 계좌 (■, ●, ***-****-****-**)
2. B계좌 : 보조금 계좌 (■, ●, ***-****-****-**)
3. C계좌 : 보조금을 인출하여 입금한 계좌 (■, ●, ***-****-****-**)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실적보고서에는 물품 등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조금 전용통장인 B계좌의 출입금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군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이 짧아 정산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보조사업자는 말 구입과 관련하여, 호스피아(말산업정보포털)에 새로 매매한 승마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전 소유자의 말이 본인의 소유로 일괄 변경등록 되었다고 하면서, 말산업정보포털의 소유 이력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말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산업정보포털에서 확인되는 'A'과 'B'의 소유일자는 [표 2]와 같이

각각 2020년 1월 1일, 2020년 11월 1일로, 보조사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각 말의 소유 변경일자는 상이하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등 ◐◐군에 제출한 서류에 'A'을 본인이 소유한 말로 제출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본인 소유도 아닌 말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 제출한 것이 되므로 보조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부적정 청구한 승마 강습비 관련 보조금 10,410천 원에 대해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하여 주시고,**(시정)**

② 출석부 부적정 작성 및 말 구입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사실관계 및 위법성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에서 제출한 승마강습 출석 현황

성명 (강습횟수)	출석부에 기재된 출석현황	
AA (103)	1월(8) : 5, 7, 12, 14, 19, 21, 26, 28 2월(8) : 2, 4, 9, 11, 16, 18, 23, 25 3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4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5월(8) : 4, 6, 11, 13, 18, 20, 25, 27 6월(9) : 1, 3, 8, 10, 15, 17, 22, 24, 29	7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8월(9) : 3, 5, 10, 12, 17, 19, 24, 26, 31 9월(8) : 2, 7, 9, 14, 16, 23, 28, 30 10월(8) : 5, 7, 12, 14, 19, 21, 26, 28 11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12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BB (103)	1월(8) : 5, 7, 12, 14, 19, 21, 26, 28 2월(8) : 2, 4, 9, 11, 16, 18, 23, 25 3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4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5월(8) : 4, 6, 11, 13, 18, 20, 25, 27 6월(9) : 1, 3, 8, 10, 15, 17, 22, 24, 29	7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8월(9) : 3, 5, 10, 12, 17, 19, 24, 26, 31 9월(8) : 2, 7, 9, 14, 16, 23, 28, 30 10월(8) : 5, 7, 12, 14, 19, 21, 26, 28 11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12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CC (52)	1월(4) : 5, 12, 19, 26 2월(4) : 2, 9, 16, 23, 3월(5) : 2, 9, 16, 23, 30 4월(4) : 6, 13, 20, 27 5월(4) : 4, 11, 18, 25 6월(5) : 1, 8, 15, 22, 29	7월(4) : 6, 13, 20, 27 8월(5) : 3, 10, 17, 24, 31 9월(4) : 7, 14, 21, 28 10월(4) : 5, 12, 19, 26 11월(5) : 2, 9, 16, 23, 30 12월(4) : 7, 14, 21, 28,
RR (156)	1월(14) :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2월(12) :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3월(12) :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4월(13) :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5월(14) : 1, 2, 7, 8, 9, 14, 15, 16, 21, 22, 23, 28, 29, 30 6월(12) :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7월(14) :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 8월(13) : 1,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 29 9월(12) : 3, 4, 5, 10, 11, 12, 17, 18, 19, 24, 25, 26 10월(15) : 1,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11월(12) :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12월(13) : 3, 4, 5, 10, 11, 12, 17, 18, 19, 24, 25, 26, 31
DD (104)	1월(8) : 5, 7, 12, 14, 19, 21, 26, 28 2월(8) : 2, 4, 9, 11, 16, 18, 23, 25 3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4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5월(8) : 4, 6, 11, 13, 18, 20, 25, 27 6월(9) : 1, 3, 8, 10, 15, 17, 22, 24, 29	7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8월(9) : 3, 5, 10, 12, 17, 19, 24, 26, 31 9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10월(8) : 5, 7, 12, 14, 19, 21, 26, 28 11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12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EE (103)	1월(8) : 6, 8, 13, 15, 20, 22, 27, 29 2월(7) : 3, 5, 10, 17, 19, 24, 26 3월(9) : 3, 5, 10, 12, 17, 19, 24, 26, 31 4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5월(8) : 5, 7, 12, 14, 19, 21, 26, 28 6월(9) : 2, 4, 9, 11, 16, 18, 23, 25, 30	7월(9) : 2, 7, 9, 14, 16, 21, 23, 28, 30 8월(8) : 4, 6, 11, 13, 18, 20, 25, 27 9월(9) : 1, 3, 8, 10, 15, 17, 22, 24, 29 10월(9) : 1, 6, 8, 13, 15, 20, 22, 27, 29 11월(8) : 3, 5, 10, 12, 17, 19, 24, 26 12월(10) : 1, 3, 8, 10, 15, 17, 22, 24, 29, 31

성명 (강습횟수)	출석부에 기재된 출석현황	
FF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LL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GG (26)	1월(2) : 10, 24 2월(2) : 7, 21, 3월(2) : 7, 21 4월(2) : 4, 18 5월(3) : 2, 16, 30 6월(2) : 13, 27	7월(2) : 11, 25 8월(2) : 8, 22 9월(2) : 5, 19 10월(3) : 3, 17, 31 11월(2) : 14, 28 12월(2) : 12, 26
HH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II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JJ (52)	1월(5) : 3, 10, 17, 24, 31 2월(4) : 7, 14, 21, 28 3월(4) : 7, 14, 21, 28 4월(4) : 4, 11, 18, 25 5월(5) : 2, 9, 16, 23, 30 6월(4) : 6, 13, 20, 27	7월(4) : 4, 11, 18, 25 8월(5) : 1, 8, 15, 22, 29 9월(4) : 5, 12, 19, 26 10월(5) : 3, 10, 17, 24, 31 11월(4) : 7, 14, 21, 28 12월(4) : 5, 12, 19, 26
KK (26)	1월(2) : 13, 27 2월(2) : 10, 24 3월(2) : 10, 24 4월(2) : 7, 21 5월(2) : 5, 19 6월(3) : 6, 16, 30	7월(2) : 14, 28 8월(2) : 11, 25 9월(2) : 8, 22 10월(2) : 6, 20 11월(2) : 3, 17 12월(3) : 1, 15, 29

성명 (강습횟수)	출석부에 기재된 출석현황	
MM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NN (52)	1월(5) : 2, 9, 16, 23, 30 2월(4) : 6, 13, 20, 27 3월(4) : 6, 13, 20, 27 4월(4) : 3, 10, 17, 24 5월(5) : 1, 8, 15, 22, 29 6월(4) : 5, 12, 19, 26	7월(5) : 3, 10, 17, 24, 31 8월(4) : 7, 14, 21, 28 9월(4) : 4, 11, 18, 25 10월(5) : 2, 9, 16, 23, 30 11월(4) : 6, 13, 20, 27 12월(4) : 4, 11, 18, 25
OO (155)	1월(14) : 2, 3, 6, 9, 10, 13, 16, 17, 20, 23, 24, 27, 30, 31 2월(12)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월(13)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4월(12) : 3, 4, 7, 10, 11, 14, 17, 18, 21, 24, 25, 28 5월(14)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6월(12) : 2, 5, 6, 9, 12, 13, 16, 19, 20, 23, 26, 27, 30	7월(13) : 3, 4, 7, 10, 11, 14, 17, 18, 21, 24, 25, 28, 31 8월(13) : 1, 4, 7, 8, 11, 14, 15, 18, 21, 22, 25, 28, 29 9월(13) : 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10월(14) : 2, 3, 6, 9, 10, 13, 16, 17, 20, 23, 24, 27, 30, 31 11월(12)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12월(13) : 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PP (104)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10)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9) : 3, 4, 10, 11, 17, 18, 24, 25, 31 8월(9) : 1, 7, 8, 14, 15, 21, 22, 28, 29 9월(8) : 4, 5,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QQ (155)	1월(14) : 2, 3, 6, 9, 10, 13, 16, 17, 20, 23, 24, 27, 30, 31 2월(12)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월(13)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4월(12) : 3, 4, 7, 10, 11, 14, 17, 18, 21, 24, 25, 28 5월(14)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6월(12) : 2, 5, 6, 9, 12, 13, 16, 19, 20, 23, 26, 27, 30	7월(13) : 3, 4, 7, 10, 11, 14, 17, 18, 21, 24, 25, 28, 31 8월(13) : 1, 4, 7, 8, 11, 14, 15, 18, 21, 22, 25, 28, 29 9월(13) : 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10월(14) : 2, 3, 6, 9, 10, 13, 16, 17, 20, 23, 24, 27, 30, 31 11월(12)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12월(13) : 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SS (97)	1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2월(8) : 6, 7, 13, 14, 20, 21, 27, 28 3월(8) : 6, 7, 13, 14, 20, 21, 27, 28 4월(8) : 3, 4, 10, 11, 17, 18, 24, 25 5월(9) : 1, 2, 8, 9, 15, 16, 22, 23, 29, 30 6월(8) : 5, 6, 12, 13, 19, 20, 26, 27	7월(8) : 3, 4, 10, 11, 17, 18, 24, 25 8월(6) : 1, 8, 14, 15, 21, 22 9월(6) : 11, 12, 18, 19, 25, 26 10월(10) : 2, 3, 9, 10, 16, 17, 23, 24, 30, 31 11월(8) : 6, 7, 13, 14, 20, 21, 27, 28 12월(8) : 4, 5, 11, 12, 18, 19, 25, 26
TT (155)	1월(12) : 5, 6, 8, 12, 13, 15, 19, 20, 22, 26, 27, 29 2월(11) : 2, 3, 5, 9, 10, 16, 17, 19, 23, 24, 26 3월(14) : 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 30, 31 4월(13) : 2, 6, 7, 9, 13, 14, 16, 20, 21, 23, 27, 28, 30 5월(12) : 4, 5, 7, 11, 12, 14, 18, 19, 21, 25, 26, 28 6월(14) : 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7월(13) : 2, 6, 7, 9, 13, 14, 16, 20, 21, 23, 27, 28, 30 8월(13) : 3, 4, 6, 10, 11, 13, 17, 18, 20, 24, 25, 27, 31 9월(13) : 1, 3, 7, 8, 10, 14, 15, 17, 21, 22, 24, 28, 29 10월(13) : 1, 5, 6, 8, 12, 13, 15, 19, 20, 22, 26, 27, 29 11월(13) : 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 30 12월(14) : 1, 3, 7, 8, 10, 14, 15, 17, 21, 22, 24, 28, 29, 31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냉장유통 확대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2개 소에 대해 [표 1]과 같이 사업비 총 50,970천원(국비 15,000, 시비 7,500, 구비 7,500, 자부담 20,970원)을 집행하였다.

[표 1]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대상자	區 세출 예산과목	재원					
			합계	보조금 (60%)				자부담(40%)
				소계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25,280	15,000	7,500	3,750	3,750	10,280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25,690	15,000	7,500	3,750	3,750	10,690

주. 최대 1500만원(국750, 시375, 구·군375) 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에는 지원대상이 계란 냉장유통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 선정 시 [표 2]와 같이 영업이력, 냉장차량 보유 여부 및 평균 일일처리물량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공통) 2021. 1. 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해당 사업 공고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하며, '17년, '20년 기수혜 영업자 제외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 ~14천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4천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그 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발췌

따라서 계란냉장차량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식용란 거래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해 7월 13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개시한 ◉에게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대상 1순위 요건인 ① 냉장차량을 미보유하고 ② 20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이 3천 ~ 14천개를 취급하는 업체에 해당한다하여 계란 냉장차량 구매비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구는 영업이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하여 영업 이력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3]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기 준	영업이력(1년 이상)	냉장차량 보유 여부	일 평균 처리물량
보조사업자	2020. 7.13. ~ 2020.12.31.	미보유	8,173개/일
적정여부	**X** ※ 5개월	**O**	**O** ※'21년 8~12월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구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란 냉장차량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냉장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같은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의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서류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의 보조금 교부요청에 따라, 지원금 15,000천원(국비 7,500, 시비 3,750, 구비 3,750)을 보조비율에 따라 지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계란, 청과물을 도소매하는 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표 4]와 같이 차량구입액(냉장장치 설치비용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298,182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59.33%)을 곱한 금액인 1,363,510원 만큼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표 4] 계란 냉장 지원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

(단위:원)

구·군	보조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차량구입비			보조금 (보조율-ⓑ)	공제대상액 (ⓐ*ⓑ)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구	◉	2021.05.07.	포터II (냉장장치 포함)	25,280,000	22,981,818	2,298,182	15,000,000 (59.33%)	**1,363,51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란 냉장차량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이 1,363,510원 과다 지급되었다.

4.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항목에 따르면 영업자는 해당 냉장 차량을 5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실적을 연 1회 이상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지방재정법(2021. 7. 13.「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냉장차량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구는 지원받은 영업자의 계란 냉장차량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조사업자인 ◉(대표 △)는 계란 냉장차량 구매지원금인 보조금을 2021년 10월 4일 수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였고, 냉장차량은 감사일 현재 ◉ 주식회사(대표 ◑)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식회사(대표 ◑)는 보조사업자인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표 5]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계란 냉장차량을 취득한 이후인 2021년 11월 1일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하였다.

[표 5] 사업자등록 현황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보조사업자
◉	△	***-**-*****	2020. 6. 1. (폐업 2021.12.31.)	2020. 7. 13.	O
◉㈜	◑	***-**-***** (법인 ******-*******)	2018. 7. 1.	**2021. 11. 1.**	X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냉장차량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21년 12월 31일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냉장차량에 대해서는 폐업일 기준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차량은 임의로 ◉ 주식회사(대표 ◑)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과)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표 △)가 폐업하였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냉장차량에 대해 폐업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구는 폐업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금액 반환조치에 대해서, 냉장차량이 보조사업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 냉장차량의 소유가 최초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자인 △으로 유지되고 있어 차량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수 처분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의 운영업체 변경(보조사업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따른 승인절차가 누락 되었으므로 추후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영업실적이 기준에 못 미쳐 부적정하게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자신의 업종을 폐업하면서,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체에 냉장차량을 운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폐업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냉장차량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환 조치하기 바라며,**(시정)**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만큼 보조금에서 제외하여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냉장유통 확대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1개 소에 대해 [표 1]과 같이 사업비 총 13,700천원(국비 4,065, 시비 2,033, 구·군비 2,033, 자부담 5,569원)을 집행하였다.

[표 1]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대상자	區 세출 예산과목	재원				
			합계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13,700	4,065	2,033	2,033	5,569

주. 최대 1500만원(국750, 시375, 구·군375) 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냉장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같은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의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서류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표 2]와 같이 차량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25,455원과 냉동기 장착 설비금액의 부가가치세액 220,000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59.34%)을 곱한 금액인 739,040원 만큼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란 냉장 지원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

(단위:원)

구·군	보조 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차량구입비			보조금 (보조율-ⓑ)	공제대상액 (ⓐ*ⓑ)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 계				13,700,000	12,454,545	1,245,455		**739,040**
■■구	♥	2021.03.09.	라보	11,280,000	10,254,545	1,025,455	8,130,000 (59.34%)	**608,500**
		2021.03.18.	냉장장치	2,420,000	2,200,000	220,000		**130,54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란 냉장차량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이 739,040원 과다 지급되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취득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는 [표 3]과 같이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냉장차량에 대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표 3]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내역

(단위: 천원)

구·군	취득연도	재산명	기종	취득가액			관리기간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구	2021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냉동탑차)	라보	13,700	8,131	5,569	5년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중요재산이 대여, 교환, 양여, 담보의 제공 등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요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739,0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액에 대하여는 최종 환급액을 확인 후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시정)**

② 향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주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중요재산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냉장유통 확대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2개 소에 대해 [표 1]과 같이 사업비 총 52,782천 원(국비 14,671, 시비 7,335, 구·군비 7,335, 자부담 23,441)을 집행하였다.

[표 1]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대상자	區 세출 예산과목	재원					
			합계	보조금 (60%)				자부담(40%)
				소계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2020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3,902	14,341	7,171	3,585	3,585	9,561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8,880	15,000	7,500	3,750	3,750	13,880

주. 최대 1500만원(국750, 시375, 구·군375) 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의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구·군

에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실적을 연 1회 이상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재정법」(現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계란 냉장차량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문제점

감사일 현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구의 계란 냉장차량(차량번호 **저****)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는 2020년 7월 27일 차량을 구매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표 2]와 같이 금융기관에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9,700,000원을 저당권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2] 차량등록원부 상 근저당설정 현황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저당권 설정내용
	계	보조	자부담		
◈ (대표 △)	23,902,804	14,341,680	9,561,124	포터II 냉동탑차 (**저****)	- 저당권설정일 : 2020.7.27. - 저당권자 : **캐피탈㈜ - 채무자 : △ - 채권가액 : 9,700,000원

자료: 차량등록원부 기재사항 재구성

또한 차량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차량의 최초 등록 시에는 보조사업자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2022년 3월 18일에 공동소유자로 ■(보조사업자의 자)를

등록하고 차량 지분 1%에 대해 명의이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동명의 지분만큼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다.

그런데 ♤♤구(◆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및 공동소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2020년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및 타인 양도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앞으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냉장유통 확대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3개 소에 대해 [표 1]과 같이 사업비 총 79,549천원(국비 22,500, 시비 11,250, 구·군비 11,250, 자부담 34,549)을 집행하였다.

[표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대상자	區 세출 예산과목	재원					
			합계	보조금 (60%)				자부담(40%)
				소계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2020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6,100	15,000	7,500	3,750	3,750	11,100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6,300	15,000	7,500	3,750	3,750	11,300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7,149	15,000	7,500	3,750	3,750	12,149

주. 최대 1500만원(국750, 시375, 구·군375) 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냉장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같은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의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서류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표 2]와 같이 차량구입액과 냉장장치 설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372,727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57.47%)을 곱한 금액인 1,363,600원 만큼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란 냉장 지원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

(단위:원)

구·군	보조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차량구입비			보조금 (보조율ⓑ)	공제대상액 (ⓐ*ⓑ)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 계				26,100,000	23,727,273	2,372,727		**1,363,600**
♧♧구	▽	2020.07.20.	포터II	17,850,000	16,227,273	1,622,727	15,000,000 (57.47%)	**932,580**
		2020.07.31.	냉장장치	8,250,000	7,500,000	750,000		**431,02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란 냉장차량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이 1,363,600원 과다 지급되었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해서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취득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는 [표 3]과 같이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냉장차량에 대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표 3]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내역

(단위: 천원)

구·군	취득연도	재산명	기종	취득가액			관리기간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구	2020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냉동탑차)	포터II	26,100	15,000	11,100	5년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요재산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소홀하

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1,363,6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액에 대하여는 최종 환급액을 확인 후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시정)**

② 향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주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냉장유통 확대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2개 소에 대해 [표 1]과 같이 사업비 총 53,570천 원(국비 14,913, 시비 7,457, 구·군비 7,457, 자부담 23,744)을 집행하였다.

[표 1]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대상자	區 세출 예산과목	재원					
			합계	보조금 (60%)				자부담(40%)
				소계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2021	□ (대표 △)	민간자본사업보조	28,860	15,000	7,500	3,750	3,750	13,860
2021	■ (대표 ▲)		24,710	14,826	7,413	3,706.5	3,706.5	9,884

주. 최대 1500만원(국750, 시375, 구·군375) 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냉장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같은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의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류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표 2]와 같이 차량구입액(냉장장치 설치비용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246,364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60%)을 곱한 금액인 1,347,810원 만큼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란 냉장 지원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

(단위:원)

구·군	보조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차량구입비			보조금 (보조율-ⓑ)	공제대상액 (ⓐ*ⓑ)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구	■	2021.05.31.	봉고 (냉장장치 포함)	24,710,000	22,463,636	2,246,364	14,826,000 (60%)	**1,347,81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란 냉장차량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이 1,347,810원 과다 지급되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공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지)에서는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취득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총 14,826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득가액 총 24,710천 원인 냉장차량에 대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표 3]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내역

(단위: 천원)

구·군	취득연도	재산명	기종	취득가액			관리기간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구	2021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냉동탑차)	봉고	24,710	14,826	9,884	5년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중요재산이 대여, 교환, 양여, 담보의 제공 등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요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1,347,8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액에 대하여는 최종 환급액을 확인 후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시정)**

② 향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주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원예시설 지원사업 공시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원예작물 등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표 1]과 같이 “수출농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등을 통해 원예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원예시설 등 지원사업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연도	총사업비	사업량	지원한도	지원내용	자부담
①수출농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019	160,000	4~5개소	20,000천원/개소	· 기존 시설 구조 개선 및 목상(목재) 원예시설의 개·보수 등	50%
	2020	120,000	3개소	20,000천원/개소		
	2021	120,000	3개소	20,000천원/개소		
②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2019	267,500	13개소	10,000천원/개소	· 시설현대화 : 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등 · 시설증개축 : 자동화 온실 등	50%
	2020	307,500	16개소	10,000천원/개소		
	2021	266,400	14개소	10,000천원/개소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소홀

가. 관계법령

구「지방재정법(2021. 7. 13.「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 현재액의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취득재산명, 규격(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및 설치주소 등에 대해 항상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시(♠과) 및 ◇◇구 자체 지침에서도 [표 2]와 같이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기계·장비는 5년)으로 정하고, 구청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표 2] 사업별 사후관리 규정 현황

사업명	사업지침	내용	
①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구	관리기간	10년(부동산 및 그 종물), 5년(기계·장비)
		관리대장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의무
		점검횟수	연 2회 이상
②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市(♠과)	관리기간	10년(부동산 및 그 종물), 5년(기계·장비)
		관리대장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의무
		점검횟수	연 2회 이상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부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별표]와 같이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 총 53건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는 보조금 지원 이후 이와 관련한 점검 및 대장관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사용·관리 주체, 보관 장소, 장비 상태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요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공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 연번	취득 연도	재산명	위 치	면적 (㎡)	취득가액			관리 기간	보조 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1	1	2019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1636평	27,092	13,000	14,092	5년	**
2	2	2019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에너지절감시설)	◇◇구 **동	2,959	21,230	10,307	10,923	5년	**
3	3	2019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	32,820	16,000	16,820	5년	**
4	4	2019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2,000	41,992	20,000	21,992	5년	**
5	5	2019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환기시설)	◇◇구 **동	2,975	45,129	20,000	25,129	5년	**
6	6	2020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5,103	40,892	18,892	22,000	5년	**
7	7	2020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1,620	41,454	18,910	22,544	5년	**
8	8	2020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보수)	◇◇구 **동	-	45,660	20,000	25,660	5년	**
9	9	2021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개폐기)	◇◇구 **동	2,310	19,493	9,493	10,000	5년	**
10	10	2021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 (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구 **동	2,096	39,608	18,999	20,609	5년	**
11	1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12	2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13	3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선별포장시설)	◇◇구 **동	-	24,000	10,000	14,000	5년	**
14	4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5,950	10,656	5,328	5,328	5년	**
15	5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2,145	13,000	6,159	6,841	5년	**
16	6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4,397	20,634	10,000	10,634	5년	**
17	7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18	8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9,000	10,000	19,000	5년	**

연번	사업 연번	취득 연도	재산명	위 치	면적 (㎡)	취득가액			관리 기간	보조 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19	9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2,975	13,084	6,542	6,542	5년	**
20	10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20,485	10,000	10,485	5년	**
21	11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4,653	14,878	7,439	7,439	5년	**
22	12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5,966	20,482	10,000	10,482	5년	**
23	13	2019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7,589	20,000	10,000	10,000	5년	**
24	14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4,500	20,000	10,000	10,000	5년	**
25	15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하우스 수리)	◇◇구 **동	-	23,270	10,000	13,270	5년	**
26	16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27	17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3,960	14,240	7,120	7,120	5년	**
28	18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하우스 개축)	◇◇구 **동	5,990	21,952	10,000	11,952	5년	**
29	19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2,975	10,320	5,160	5,160	5년	**
30	20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양액시설)	◇◇구 **동	3,000	18,150	9,030	9,120	5년	**
31	21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32	22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33	23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22,190	9,091	13,099	5년	**
34	24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4,500	13,630	6,815	6,815	5년	**
35	25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정수처리기)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36	26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연번	사업 연번	취득 연도	재산명	위 치	면적 (㎡)	취득가액			관리 기간	보조 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37	27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3,960	8,220	4,110	4,110	5년	**
38	28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양액시설)	◇◇구 **동	2,640	21,485	10,000	11,485	5년	**
39	29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5,897	20,943	9,650	11,293	5년	**
40	30	2020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41	31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32,000	10,000	22,000	5년	**
42	32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19,020	9,510	9,510	5년	**
43	33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18,680	9,340	9,340	5년	**
44	34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27,294	10,000	17,294	5년	**
45	35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46	36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47	37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27,400	10,000	17,400	5년	**
48	38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전자동제함기)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49	39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그로잉거터)	◇◇구 **동	-	20,000	10,000	10,000	5년	**
50	40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93,524	85,021.5	8,502.5	5년	**
51	41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25,100	9,400	15,700	5년	**
52	42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자동개폐기)	◇◇구 **동	-	37,635	9,635	28,000	5년	**
53	43	2021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무인방제시설)	◇◇구 **동	-	16,550	8,275	8,275	5년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험료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격의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인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4개소에 [표 1]과 같이 개소당 총사업비 200,000,000원에 최대 100,000,000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1]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량(개소)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합계	시비(25%)	구비(25%)	자부담(50%)	
2019	3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0	200,000	200,000	400,000	- 개소당 200백만원 - 시설하우스 설치비
2020	4		800,000	200,000	200,000	400,000	
2021	4		800,000	200,000	200,000	400,00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업시설 설치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농업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납입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납부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설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본 바, 총 9건의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험료 산출내역을 설계에 반영한 공사는 기간 중에 수행한 11건 중 ㈜ ♧에서 시행한 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8건은 보험료를 산출하지조차 않았다.

그 결과 ▽▽구는 보조사업자가 [표 2]와 같이 공사도급내역서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 산출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8개의 공사와 산출내역은 작성하였으나 보험료 납입내역서 등과 같이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을 청구한 3개의 공사에 대해서, 보완이나 추가 요구를 하지 않고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 및 정산·확정하였다.

[표 2]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공사 보험료 산출 현황

연도	보조 사업자	사업기간	시공업체	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원)			가입 여부	납부 확인 여부
				소계	산재	고용		
2019	**	2019.5.27.~2019.6.27.	㈜ ◈	1,954,320	1,800,000	154,320	부	부
	**	2019.9.18.~2019.11.6.	◉ (주)	2,164,770	1,786,230	378,540	부	부
	**	2019.7.20.~2019.11.25.	㈜ ♧	1,786,343	1,505,574	280,769	부	부
2020	**	2020.5.20.~2020.7.10.	㈜ ♧	1,918,693	1,617,122	301,571	부	부
	**	2020.10.5.~2020.12.4.	◉ (주)	2,186,360	1,799,470	386,890	부	부
	**	2020.10.12.~2020.12.4.	◉ (주)	2,162,970	1,798,280	364,690	부	부
	**	2020.10.12.~2020.12.4.	◉ (주)	2,186,371	1,799,470	386,901	부	부
2021	**	2021.4.26.~2021.6.23.	㈜ ♧	1,582,718	1,333,954	248,764	부	부
	**	2021.5.10.~2021.9.6.	◉ (주)	2,135,900	1,782,820	353,080	부	부
	**	2021.7.26.~2021.10.12.	◉ (주)	2,137,010	1,783,910	353,100	부	부
	**	2021.10.20.~2021.11.25.	㈜ ☆	3,021,400	2,452,000	569,400	부	부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앞으로 공사계약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및 제경비 등이 설계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는 수출농가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수출농가 시설 구조 개선 및 원예시설 개·보수 비용을 개소당 20,000,000원을 한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1]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량 (개소)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합계	구비 (50%)	자부담 (50%)	
2019	4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80,000	80,000	·개소당 지원한도 : 20백만원
2020	3		120,000	60,000	60,000	
2021	3		120,000	60,000	60,00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대상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교부결정)에서는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및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의 「2019년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의 사업목적이 수출농가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기존 시설의 구조개선 및 목상(목재) 원예시설의 개·보수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 한해 검토 후 선정토록 정해놓고 있다.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류난방기 및 작업용 농기계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내용이 시설 개·보수 등 당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2021년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면서, [표 2]와 같이 22,000,000원 상당의 농업용 펄라이트[1] 1,600포를 구입하겠다는 ◎작목반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표 2]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부적정 지원 대상 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농지소재지	지원사항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작목반	**동 **-** 외 2필지	농업용 펄라이트 (1600포)	22,000	10,000	12,00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021년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검토" 보고서(▧▧구 ⊙과-****, 2021.6.**.)를 보면 검토결과에 "추가신청한 농업용 펄라이트는 농업용 자재임"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수출 실적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수출농가의 사기진작 및 소득보전을 위해" 해당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1) 펄라이트 : 화산작용으로 생긴 진주암을 가열, 팽창해 만든 백색의 식물재배용 인공 토양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농업용 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를 지원코자 하는 당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농업용 자재구입으로 지원 신청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해당 농가를 당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구는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는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농업용 자재(펄라이트)를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이하 "♣"라 한다)에서는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한 수직농장(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을 통한 수직농장 기술 보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2020년 사업비 72,000,000원(시비 90%, 자부담 10%)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였다.

[표 1]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사업 개요

(단위: 천원)

지원연도	총 사업비			사업량	사업대상	지원범위
	합계	시비	자부담			
2020	72,000	64,800	7,200	1개소 (실내농장 10평 이상)	농업인, 영농법인, 기업 등	생산시설, 환경제어, 부대시설 등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자 자부담 부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예규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제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교부결정)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기부담금 능력 유무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자기부담금이 부적정할 경우 시정하도록 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20년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 결과 2개소(개인 1, 법인 1)가 신청하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1] 심의결과 개인 신청자가 1순위로 선정 결정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개인 신청자가 개인사정(질병)으로 2020. 7. 2.자에 사업을 포기하였고, 차순위였던 (주) ♣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을 2020. 7. 10.자에 재선정[2]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에서는 보급형 수직농장 조성 시범사업(이하 “수직농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당초 총 사업비 72,000천원(시비 90%, 자부담 10%) 중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7,200천 원을 부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 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 등 심의 기능을 함(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촉)

2) 2020 농업산합협동심의회 의결사항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그러나 선정된 보조사업자 농업법인은 자체 예산의 자부담이 아닌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가 자부담금 7,200천 원 중 일부인 5,000천 원을 부담한다는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2]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단위: 천원, %)

기관명	자부담금	비율	비고
㈜ ♣ 농업회사법인	2,200	30	현금
㈜ ▣	5,000	70	현금
합계	7,200	100	

주: 사업계획서에 ㈜ ▣는 재배된 상품에 대해 판매를 담당하기로 한 법인임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자기부담금을 보조사업자 외 타 업체와 함께 부담하여 두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되어 설치된 중요재산의 소유권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3. 중요재산 관리 등 업무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4]에 중요재산의 범위와 사후관리기간을 부동산은 10년, 부동산의 종물 10년[3],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인 해당 법인을 선정하였고 보조금 교부 검토 시에 법인이 제출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에서 “비닐하우스형 수직농장”으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하여 사업목적 및 시범요인 투입사항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는 판단만 하였다.

그러나 해당 설치 예정번지 사업지가 농지[4]에 해당하여 컨테이너형으로 설치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 용도 및 존치기간(3년 이내) 등의 문제로 “비닐하우스형”으로 변경·승인 결정할 때는 사업목적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원한 중요재산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한편 ♣에서 작성한 2020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자료(대상자 선정 배점표)에 해당법인 신청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의견에서도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보완이 필요함(사업선정 시 사업부지 임대 계획)”이라는 의견을 심의자료에 작성 제출한 바도 있다.

그리고 법인이 제출한 [표 3]의 사업부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총 면적 463㎡ 모두를 사용 및 임대기간을 2020. 8. 1. ~ 2025. 7. 30.(5년간)으로만 하여 월 30만원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3)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4) 해당 번지의 지목(전)

[표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부분 발췌)

임대대상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세부내용				
				총면적	사용 (임대)면적	용도	임대기간	임대가격 (단위:만원)
구 **동 **-	○	㈜ ♣ 농업법인	2020년 7월29일	463㎡	463㎡	비닐하우스, 식물재배 시설 외	2020.08.01.~ 2025.07.30. (5년간)	月30만원 (보증금 별도)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토지)에서는 [표 4]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2020. 7. 29.) 이전인 2015. 6. 22.자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금 2,5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날 지상권설정(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도 함께 되어 있었다.

[표 4] 등기부등본(을구 부분 발췌)

소재지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구 **동 **-**	근저당권설정	2015년6월22일 제*****호	2015년6월2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520,000,000원 채무자 ○ (※토지소유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지상권설정	2015년6월22일 제*****호	2015년6월22일 설정계약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중앙부분 40㎡ 존속기간 2015년 6월 22일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

자료: ♣ 제출자료 및 등기부등본(을구부분) 확인

또한 감사 기간 중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토지)을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재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2022. 8. 29.자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가처분 결정(금지사항 :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에 따르면 농업법인 지원요건에는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 명의가 아닐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

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는 법인에서 토지 임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에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등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시정 등의 추가 보완조치(중요재산 관리 기간동안 임대기간 변경(5년 →10년), 채권확보 방안 또는 타 사업지 확보 등)를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근저당 및 가처분 결정된 상태로 향후 사업 대상 토지가 추가 분쟁 발생 시 중요재산에 대한 보호 및 사업추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는 이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규모는 0.0146ha(44평)로 소규모이고 농가소득을 증대로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반영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지적된 중요재산 보호 소홀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확인 문서 및 토지 소유자(임대인)가 작성한 소유권 변경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다한다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령 등에 시설 규모 혹은 사업목적에 따라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변경 등을 통해 중요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전에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변함없다.

다만 당초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갑작스럽게 사업 포기하여 추진 일정 및 사업자 변경 등이 발생하였고, 중요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 등을 마련한 점,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 아닌 담당자가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에서 처음 시도된 시 자체 시범사업임을 고려하고자 한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향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등을 면밀하게 확인 및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거주·경작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3년간 총 사업비 278,500,000원(구비 83,430,000원, 농협 83,430,000원, 자부담 111,240,000원)의 사업예산으로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총 16대를 지원하였다.

[표 1]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업예산					지원내역	
지원연도	합계	구비(30%)	농협(30%)	자부담(40%)	사업량	보조금 지원
2019	125,500	37,500	37,500	50,000	7대	농기계 구입비의 60%이내 (보조금 지원한도 10,200)
2020	51,000	15,300	15,300	20,400	3대	
2021	102,000	30,600	30,600	40,800	6대	
합계	**278,500**	**83,430**	**83,430**	**111,240**	**16대**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2021년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

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를 구입한 보조사업자 6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세액이 총 2,692,43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 지급 때 구비 보조율만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표 2] 2021년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1)]

(단위: 원)

보조 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구비보조금 (보조율-ⓑ)	공제대상액 (세액ⓐ×보조율ⓑ)
***	2021.7.26.	T20 세트	21,225,000	**2,122,500**	23,347,500	5,100,000 (21%)	**445,720** (2,122,500×21%)
***	2021.6.6.	농업용드론	17,215,000	**1,721,500**	18,936,500	5,100,000 (26%)	**447,590** (1,721,500×26%)
***	2021.6.6.	농업용드론	17,215,000	**1,721,500**	18,936,500	5,100,000 (26%)	**447,590** (1,721,500×26%)
***	2021.7.3.	농업용드론	23,560,000	**2,356,000**	25,916,000	5,100,000 (19%)	**447,640** (2,356,000×19%)
***	2021.7.8.	농업용드론	18,530,000	**1,853,000**	20,383,000	5,100,000 (25%)	**463,250** (1,853,000×25%)
***	2021.7.6.	농업용드론	25,920,000	**2,592,000**	28,512,000	5,100,000 (17%)	**440,640** (2,592,000×17%)
합계(6명)			**123,665,000**	**12,366,500**	**136,031,500**	**30,600,000**	**2,692,430**

주: 공제대상액이 원 단위로 발생하였을 때 절사함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1) 2019년 ~ 2020년 구입한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은 영세율 적용 품목 있었으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적용됨

그 결과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조사업비에 포함하여 총 2,692,43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공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3항에 구청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구에서 계획한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계획”에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내용이 표시된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취득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공시 및 확인·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대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을 구 홈페이지에 공시한 이후에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양

도, 대여 등)하는지 등 변동 현황에 대해 반기별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지원 이후 이와 관련한 점검[2]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 내역

(단위: 원)

지원연도	대상자	모델명 (기대번호)	제조회사	구입가격	보조금지원금액 (구비,농협)
2019년 (7대)	***	***	***	16,990,000	10,194,000
	***	***	***	16,990,000	10,194,000
	***	***	***	17,000,000	10,200,000
	***	***	***	16,990,000	10,194,000
	***	***	***	17,870,000	10,200,000
	***	***	***	16,990,000	10,194,000
	***	***	***	16,990,000	10,194,000
2020년 (3대)	***	***	***	15,650,000	9,390,000
	***	***	***	17,215,000	10,200,000
	***	***	***	24,123,000	10,200,000
2021년 (6대)	***	***	***	18,936,500	10,200,000
	***	***	***	18,936,500	10,200,000
	***	***	***	20,383,000	10,200,000
	***	***	***	28,512,000	10,200,000
	***	***	***	25,916,000	10,200,000
	***	***	***	23,347,500	10,200,00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인 무인항공방제기(드론)에 대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사용·관리 주체, 보관 장소, 장비 상태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중요재산이 대여, 교환, 양여, 담보의 제공 등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요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감사기간(2022.9.26.~10.14.) 중 구입한 드론에 대해 양도, 대여 등이 있는지 현지 확인 결과 보조사업자 보관하여 활용 중임을 확인 제출(♠♠구)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2,692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가능액은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 후 조치하시고,**(시정)**

②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농업 기계화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계획”(이하 “생산기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에서는 사업비 100,000,000원(구비 100%)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편성하고 사업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동이용 농업용 장비 구입비(트랙터 및 부속장비 등)를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이후 선정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표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예산 등 현황

(단위: 천원)

사업예산 (구비100%)	편성예산	지원 농기계 종류	지원금액	지원법인	비고
1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트랙터 등 11개	99,233	◉ 영농조합법인	자부담 없음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1. 1. 28. ○○구에서 작성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계획”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1]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구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2021년 친환경농업분야 등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2]”을 2021. 1. 14. 자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면서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누락 한 채로 통보하였다.

한편 “생산기반 지원사업” 경우에는 14일이 지난 2021. 1. 28.자에 세부사업 계획서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면서 접수 기간을 같은 해 2. 5.까지로 접수 받도록 통보하여 홍보기간이 약 7일(토,일 제외)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른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 공모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1) 친환경농업 단체 중 재배 면적이 가장 큰 농업인 단체
2) 대상사업: 11개 친환경농업분야 사업 통보 및 홍보기간은 약 17일(토,일 제외) 정도의 홍보 기간을 두었음

이후 ○○구에서는 2021. 2. 8. 작성한 내부검토 문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선정 검토”에서 1개 단체만 신청하였고 해당 단체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구에서는 “생산기반 지원사업”의 신청조건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로 하였으나 2021년 기준 ○○구에서 위의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법인(단체) 외에는 없는 상태였다.

반면 신청자격을 법인(단체)이 아닌 개인으로 하였을 경우라면 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는 20농가[3] 중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단체) 소속농가(13농가)를 제외하면 7농가가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박탈되었다.

아울러 “생산기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농업용 장비 구입 시 부담하는 자부담이 없고 부속장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비슷한 아래 [표 3]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두 개 사업의 지원 범위가 형평성 있도록 계획되지 않았다.

[표 3] 2021년 농업용 장비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대상	관내 거주·경작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단체	○○구 관내 거주·경작하는 농업인(작목반) 등
사업량	트렉터 및 부속장비 (예산 범위 내)	경운기, 이앙기 등 43대 (지원한도: 3,000천원/대)
사업비	100,000천 원 (구비 100%)	215,000천 원 (구비 150,000 자부담 65,000)
자부담유무	**자부담 없음**	**자부담(25%)**
지원내용	농업용 장비 구입비 (트랙터 및 **부속장비 포함**)	정부 농기계화 사업기종 한함 (본체·**부속 함께 지원불가**)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른 사업과 달리 짧은 홍보 기간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료: ○○구 제출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인증통계 자료

3.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공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제3항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취득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공시 및 확인·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총 99,233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인 트랙터 등 11개 종류의 기계, 장비 등에 대해 중요재산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고,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양도, 대여 등)하는지 등 변동현황에 대해 반기별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4]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비로 구매한 물품 내역

(단위: 천원)

일련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형 식 (규격)	단가	수량	구입가격	구입일자	내구연한
	합 계				17	99,233		
1	트랙터	***	***	18,150	1	18,150	2021.04.14	5년
2	트랙터	***	***	17,242	2	34,484	2021.04.14	5년
3	트랙터	***	***	14,672	1	14,672	2021.04.14	5년
4	원판쟁기	***	***	3,170	2	6,340	2021.04.14	5년
5	관리기	***	***	2,420	2	4,840	2021.04.14	5년
6	관리기	***	***	1,892	1	1,892	2021.04.14	5년
7	쇄토기	***	***	2,110	4	8,440	2021.04.14	5년
8	쇄토기	***	***	2,170	1	2,170	2021.04.14	5년
9	로우더	***	***	4,947	1	4,947	2021.05.12	5년
10	파종기	***	***	2,813	1	2,813	2021.05.12	5년
11	비료살포기	***	***	485	1	485	2021.05.12	5년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인 트랙터 등 11개 종류의 기계, 장비 등에 대한 공시 및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사용·관리 주체, 보관 장소, 장비 상태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중요재산이 대여, 교환, 양여, 담보의 제공 등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요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②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공시하고, 중요재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광역시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팽연왕겨[1] 구입비 지원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팽연왕겨 지원사업 예산 현황 등

(단위: 천원)

사업예산					지원내역	
지원연도	합계	구비	농협	자부담	사업량	보조금 지원
2019	100,000	50,000	-	50,000	625톤	(지원단가) 구입비 50% 정률 지원 (지원한도) 2,500천원
2020	80,000	40,000	-	40,000	500톤	
2021	62,000	25,000	6,000	31,000	250톤	
합계	**242,000**	**115,000**	**6,000**	**121,000**	**1,375톤**	-

주: 2021년의 경우 '행정·농협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 농협(10%) 일부 지원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1) 팽연왕겨는 일반왕겨를 고온고압으로 가공하여 수분흡수력을 높인 것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농가에 대해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등 정산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19년 ~ 2021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농가에 팽연왕겨 지원사업을 아래 [표 2]와 같이 ▣▣구(⊙과)에서 팽연왕겨 선정(지원) 대상자를 농협과 농가에 통보하면 농협은 팽연왕겨를 농가로 직접 배송하고 농가는 팽연왕겨 대금을 농협으로 납부하였다.

[표 2] 팽연왕겨 지원사업 추진 절차

대상자 선정·통보 (▣▣구▹농협농가)	➡	팽연왕겨 배송 (농협 ▹ 농가)	➡	팽연왕겨 대금 납부 (농가 ▹ 농협)	➡	정산보고서 제출 (농협 ▹ ▣▣구)	➡	농가에 보조금 입금 (▣▣구 ▹ 농가)

이 과정에서 ▣▣구는 보조사업자인 농가로부터 팽연왕겨 구입과 관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지 아니하고 농가의 팽연왕겨 거래처인 ♤♤♤ (이하 "♤농협"이라 한다)이 ▣▣구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구에서는 지원농가 개별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농협에서 제출한 "팽연왕겨 구입비 보조금 정산 자료 제출" 문서에는 ♤농협이 팽연왕겨를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증빙하는 구체적인 자료(매출전표, 사진 등)는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고 아래 [표 3]의 형태 서식으로 작성된 "농가명", "구입수량", "정산금액"만 작성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과 함께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다.

[표 3] 2019년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청구자료(부분 발췌)

(단위: 천원)

농가명	구입수량[2]	**정산금액**	비고

	톤백	소포장	계	**보조금**	자부담	
***	100	-	4,000	**2,000**	2,000	-
***	-	200	1,000	**500**	500	물량추가(+23)
***	10	-	400	**200**	200	-
***	50	-	2,000	**1,000**	1,000	-

주: ▣▣구에서는 ♤농협에서 청구한 위 정산 청구자료 명단을 근거로 보조금을 농민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음 (2019~2021년 지급 형태 동일)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구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추가 확인하지 아니하고[3] 농협에서 제출한 위의 문서만을 근거로 보조사업자인 개별 농가에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전)해 주었다.

그 결과 ▣▣구는 보조금 지급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절차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농가가 사업 포기 및 지원물량 변경 등 당초 결정과 다른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선정할 때에는 수급 자격의 적격 여부

2) 톤백 1포당 실중량 250kg(40,000원), 소포장 1포당 20kg(5,000원)
3) 이와 관련하여 농민과 농협 간의 거래 내역 및 배송자료 추가 소명(현지 확인)하여 제출함(▣▣구)

등을 확인·점검하여 대상자를 선정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에서는 포기 및 물량 변경 농가 발생으로 추가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수급 자격의 적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농협에서 신규 농가 선정[표 4] 및 당초 선정물량보다 추가로 팽연왕겨를 지원[별첨 명단] 하였다고 제출한 농가를 별도의 선정을 위한 검토나 시정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농협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급하였다.

[표 4] 2019년~2020년 ♤농협에서 신규 선정한 대상 농가

(단위: 천원)

지원 연도	농가명	구입수량		정산(지원) 금액			비고
		톤백	소포장	계	보조금	자부담	
2019	***	-	100	500	250	250	-
	***	-	100	500	250	250	-
	***	10	-	400	200	200	-
	***	7	-	280	140	140	-
2020	***	6	-	240	120	120	-

주: 최초 선정물량보다 ▣▣구 추가승인 없이 ♤농협 자체적으로 추가(증액지급) 지급한 명단은 [별첨] 참고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구는 보조사업자 선정(농가)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없이 ♤농협에서 통보한 내용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현행 팽연왕겨 지원 사업 증빙서류 확인 및 정산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2019년~2021년 최초 선정 대비 추가지급 내역

(단위: 천원, 포)

지급 연도	농가명	최초 선정 시 지급결정-(a)			최종 지급내역-(b)			**추가지급(b-a)**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2019 (53명)	***	442	-	177	500	-	200	**57**	**0**	**23**
	***	112	-	45	250	-	100	**137**	**0**	**55**
	***	40	2	-	80	4	-	**40**	**2**	**0**
	***	1,000	50	-	1,120	56	-	**120**	**6**	**0**
	***	480	24	-	540	27	-	**60**	**3**	**0**
	***	280	14	-	320	16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720	36	-	800	40	-	**80**	**4**	**0**
	***	380	19	-	420	21	-	**40**	**2**	**0**
	***	140	7	-	160	8	-	**20**	**1**	**0**
	***	140	7	-	160	8	-	**20**	**1**	**0**
	***	700	35	-	800	40	-	**100**	**5**	**0**
	***	280	14	-	320	16	-	**40**	**2**	**0**
	***	360	18	-	420	21	-	**60**	**3**	**0**
	***	300	15	-	320	16	-	**20**	**1**	**0**
	***	280	14	-	320	16	-	**40**	**2**	**0**
	***	1,000	50	-	1,120	56	-	**120**	**6**	**0**
	***	280	14	-	320	16	-	**40**	**2**	**0**
	***	500	25	-	540	27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140	7	-	160	8	-	**20**	**1**	**0**
	***	320	16	-	360	18	-	**40**	**2**	**0**
	***	560	28	-	1,200	60	-	**640**	**32**	**0**
	***	140	7	-	160	8	-	**20**	**1**	**0**
	***	700	35	-	1,500	75	-	**800**	**40**	**0**
	***	560	28	-	640	32	-	**80**	**4**	**0**
	***	140	7	-	160	8	-	**20**	**1**	**0**
	***	140	7	-	160	8	-	**20**	**1**	**0**
	***	280	14	-	320	16	-	**40**	**2**	**0**
	***	140	7	-	160	8	-	**20**	**1**	**0**
	***	140	7	-	160	8	-	**20**	**1**	**0**
	***	440	22	-	480	24	-	**40**	**2**	**0**

지급 연도	농가명	최초 선정 시 지급결정-(a)			최종 지급내역-(b)			**추가지급(b-a)**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	280	14	-	320	16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700	35	-	800	40	-	**100**	**5**	**0**
	***	1,280	64	-	1,440	72	-	**160**	**8**	**0**
	***	280	14	-	320	16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140	7	-	160	8	-	**20**	**1**	**0**
	***	140	7	-	160	8	-	**20**	**1**	**0**
	***	420	21	-	480	24	-	**60**	**3**	**0**
	***	280	14	-	320	16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140	7	-	160	8	-	**20**	**1**	**0**
	***	220	11	-	260	13	-	**40**	**2**	**0**
	***	360	18	-	420	21	-	**60**	**3**	**0**
	***	440	22	-	480	24	-	**40**	**2**	**0**
	***	280	14	-	320	16	-	**40**	**2**	**0**
	***	1,280	64	-	1,440	72	-	**160**	**8**	**0**
	***	420	21	-	480	24	-	**60**	**3**	**0**
	***	300	15	-	320	16	-	**20**	**1**	**0**
	***	300	15	-	320	16	-	**20**	**1**	**0**
	***	320	16	-	400	20	-	**80**	**4**	**0**
2020 (22명)	***	1,400	70	-	2	100	-	**600**	**30**	**0**
	***	400	20	-	600	30	-	**200**	**10**	**0**
	***	140	7	-	200	10	-	**60**	**3**	**0**
	***	140	7	-	200	10	-	**60**	**3**	**0**
	***	1,200	60	-	1,800	90	-	**600**	**30**	**0**
	***	520	26	-	800	40	-	**280**	**14**	**0**
	***	700	35	-	1	50	-	**300**	**15**	**0**
	***	800	40	-	1,200	60	-	**400**	**20**	**0**
	***	520	26	-	800	40	-	**280**	**14**	**0**
	***	700	35	-	1	50	-	**300**	**15**	**0**
	***	700	35	-	1	50	-	**300**	**15**	**0**
	***	280	14	-	400	20	-	**120**	**6**	**0**
	***	140	7	-	200	10	-	**60**	**3**	**0**

지급 연도	농가명	최초 선정 시 지급결정-(a)			최종 지급내역-(b)			**추가지급(b-a)**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보조금**	**톤백**	**소포장**
	***	800	40	-	1,200	60	-	**400**	**20**	**0**
	***	280	14	-	400	20	-	**120**	**6**	**0**
	***	520	26	-	800	40	-	**280**	**14**	**0**
	***	400	20	-	600	30	-	**200**	**10**	**0**
	***	280	14	-	400	20	-	**120**	**6**	**0**
	***	1,200	60	-	1,800	90	-	**600**	**30**	**0**
	***	400	20	-	600	30	-	**200**	**10**	**0**
	***	1,000	50	-	1,400	70	-	**400**	**20**	**0**
	***	280	14	-	400	20	-	**120**	**6**	**0**
2021 (7명)	***	350	14	-	535	7	120	**185**	**-7**	**120**
	***	525	21	-	879	18	143	**354**	**-3**	**143**
	***	450	18	-	750	30	-	**300**	**12**	**0**
	***	450	18	-	625	25	-	**175**	**7**	**0**
	***	175	7	-	240	-	80	**65**	**-7**	**80**
	***	175	7	-	195	-	65	**20**	**-7**	**65**
	***	725	29	-	1,000	40	-	**275**	**11**	**0**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시설하우스 장기재배 농업용 필름 공급을 통해 시설원예 관리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의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아래 [표 1]와 같이 외부비닐 교체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교체 비용 총 28,675,000원(보조금 7,800,000원, 자부담 20,875,000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1]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

(단위: 천원)

지원대상				사업비(비율)		
성명	대상지	선정면적	보조금 지급	합계	보조금	자부담
***	**동 **-**	800㎡	2021.11.16.	10,775 (100%)	2,800 (26%)	7,975 (74%)
***	**동 **	1,610㎡	2021.12.8.	17,900 (100%)	5,000 (28%)	12,900 (72%)

주: 보조금 최대 500만원 지원(사업단가 ㎡ 7,000원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보조금(시비 50%, 구비 5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구(◆과)에서는 농업경영체[1]를 등록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부비닐 교체사업 신청자 중 자격,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2021년 지원사업 대상자로 2명을 선정하였다.

한편 2021년 대상자 선정을 검토한 ◎◎구 내부문서를 보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시 부가세 환급액은 제외하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구에서는 2021년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보조금 지급 시에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 2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세액이 총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3호.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1,692,34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에서 보조율(*** 26%, *** 28%)만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표 2]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액 현황

(단위: 원)

보조 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공제대상액 (세액×보조율)
***	2021.11.03.	비닐,크립 등	5,275,000	**527,500**	5,802,500	환급대상	**137,150** (527,500×26%)
		사철 외	368,000	36,800	404,800	-	-
***	2021.11.24.	비닐,크립	11,648,545	**1,164,845**	12,813,299	환급대상	**326,150** (1,164,845×28%)
		설치비 외	4,624,273	462,428	5,086,701	-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하여 보조금 463,3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463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가능액은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 후 조치하시고,**(시정)**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내구력이 오래가는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지원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관내 거주(농지) 시설원예 재배자 중 농업경영체[1]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외부비닐 교체사업을 3년간 총 100,000,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단위: 천원)

사업예산					지원내역	
지원연도	사업비	시비(25%)	군비(25%)	자부담(50%)	사업량	보조금 지원
2019	30,000	7,500	7,500	15,000	0.6ha	‘19년 ㎡당 5,000원 이내 ‘20년 ㎡당 7,000원 이내 ‘21년 ㎡당 7,000원 이내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
2020	30,000	7,500	7,500	15,000	0.42ha	
2021	40,000	10,000	10,000	20,000	0.57ha	
합계	**100,000**	**25,000**	**25,000**	**50,000**	1.59ha	-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3호.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과)에서는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추진계획(2019년~2021년)”을 매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조사업 신청자 중 “설치장소 적합성”, “자부담능력”, “관내거주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합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과 함께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선정결과 알림”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후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전 착공승인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은 사업 착공승인신청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착공승인 알림”으로 승인 통보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착공승인을 보조사업자에게 알리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하여 환급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환급금을 빼고 정산하며,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함을 함께 통보하였다.

그런데 △△군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보조금 지원자 중 10명에 대한 총 2,537,84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공제나 반환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정산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원)

구분	인원	환급가능액	비고
2019년	*** 등 4명	830,020	-
2020년	*** 등 2명	307,600	-
2021년	*** 등 4명	1,400,220	-
합계	**10명**	**2,537,840**	**-**

주: 개인별 보조금 환급 가능 세액 [별첨] 참고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하여 보조금 2,537,8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2,537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가능액은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 후 조치하시고, **(시정)**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2019년~2021년 비닐하우스 외부비닐 교체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미공제자 현황

(단위: 원)

보조 사업자	사업비지원(천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보조 비율	환급가능액 (공제대상액× 보조율)
	합계	보조	자부담						
***	5,863	2,655	3,208	필름외 파이프	2,330,000	**233,000**	2,563,000	45%	**104,850** (233,000×45%)
				보수,철거 및 시공비	3,000,000	**300,000**	3,300,000	-	비환급 대상
***	1,760	800	960	하우스 설치	1,600,000	**160,000**	1,760,000	45%	**72,000** (160,000×45%)
***	10,629	5,000	5,629	농사용 비닐	4,163,000	**416,300**	4,579,300	47%	**195,660** (416,300×47%)
				시공외	5,499,727	**549,973**	6,049,700	-	비환급 대상
***	14,379	5,000	9,379	2019년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사업 2)	13,071,819	**1,307,181**	14,379,000	35%	**457,510** (1,307,181×35%)
2019년 소계 (4명)									**830,020**
***	3,190	1,155	2,035	외부비닐 교체	1,700,000	**170,000**	1,870,000	36%	**61,200** (170,000×36%)
				시공 노무비	1,200,000	**120,000**	1,320,000	-	비환급 대상
***	11,440	5,000	6,440	농업용 필름	5,600,000	**560,000**	6,160,000	44%	**246,400** (560,000×44%)
				비닐 철거 및 시공비	4,800,000	**480,000**	5,280,000	-	비환급 대상
2020년 소계 (2명)									**307,600**
***	10,864	3,500	7,364	농사용 비닐	5,627,000	**562,700**	6,189,700	32%	**180,060** (562,700×32%)
				시공비외	4,249,364	**424,936**	4,674,300	-	비환급 대상

보조 사업자	사업비지원(천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보조 비율	환급가능액 (공제대상액× 보조율)
	합계	보조	자부담						
***	11,001	5,000	6,001	농사용 비닐	10,000,910	**1,000,091**	11,001,001	45%	**450,040** (1,000,091×45%)
***	12,206	2,942	9,263	외부비닐 교체 자재 및 시공비	11,096,363	**1,109,637**	12,206,000	24%	**499,330** (1,109,637×45%)
***	13,408	5,000	8,408	농업용 필름	7,318,900	**731,890**	8,050,790	37%	**270,790** (731,890×37%)
				기타자재 외	4,870,191	**487,019**	5,357,210	-	비환급 대상
2021년 소계 (4명)									**1,400,220**

주: 환급가능액이 원단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절사함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어업용 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9호, 2013. 11. 08.)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 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 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채소형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채소류 생산지에 소형 저온·냉동저장고 설치로 출하조절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를 위해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아래 [표 1]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1]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예산 현황(2019~2021년)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총 사업 계획예산				비고
		합계	시비	군비	자부담	
2019년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2,600	12,150	24,150	36,300	보조율(25:25:50) 최대 3,000천원
2020년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2,600	12,150	24,150	36,300	
2021년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2,000	-	36,000	36,000	보조율(50:50) 최대 2,000천원

주: 2021년부터는 군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과)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경작하는 농업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2019년~2021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설치비용의 50% 이내(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보조금 최대한도 3,000천 원 이내, 2021년 최대 2,000천 원 지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사업비에서 공제 정산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채소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 통보 시 사업 추진상 유의할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될 때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저온저장고[1]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공제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반환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액 중 보조율에 따른 과다지급 내역(2019~2021년)

(단위: 천원)

구분	지원 인원	사업비 교부결정 총액			부가 가치세액(c)	**과다지급액 (c×보조율)**	비고
		합계(a)	보조금(b)	자부담			
2019년	12명	80,135,000	35,750,000	43,785,000	7,285,000	**3,249,920**	-
2020년	12명	73,980,000	33,300,000	40,680,000	6,725,454	**3,027,210**	-
2121년	15명	106,898,000	30,000,000	76,898,000	9,718,000	**2,727,150**	-
합계	**39명**	**261,013,000**	**99,050,000**	**161,363,000**	**23,728,454**	**9,004,280**	**-**

주: 상기금액은 개인별 합계 금액이며 개인별 세부 내역은 [별첨] 참고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하여 보조금 9,004,2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9,004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가능액은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 후 조치하시고, **(시정)**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1)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임

[별첨]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액 중 보조율에 따른 과다지급 내역(2019년~2021년)

연도	사업 대상자	면적 (㎡)	사업비 교부결정 총액			부가 가치세액(c)	과다지급액 (c×보조율*) *(b/a)×100
			합계(a)	보조금(b)	자부담		
합계(39명)							**9,004,280**
2019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7,205,000	3,000,000	4,205,000	655,000	272,720
	***	**	7,480,000	3,000,000	4,480,000	68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050,000	2,750,000	3,300,000	550,000	250,000
	***	**	6,600,000	3,000,000	3,000,000	600,000	272,720
소계	**12명**	**-**	**80,135,000**	**35,750,000**	**43,785,000**	**7,285,000**	**3,249,920**
2020	***	**	6,000,000	2,727,000	3,273,000	545,454	247,900
	***	**	6,050,000	2,750,000	3,300,000	550,000	250,00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820,000	3,000,000	3,820,000	620,000	272,720
	***	**	5,720,000	2,600,000	3,120,000	520,000	236,360
	***	**	5,500,000	2,500,000	3,000,000	500,000	227,270
	***	**	5,500,000	2,500,000	3,000,000	500,000	227,270
	***	**	6,600,000	3,000,000	3,600,000	600,000	272,720
	***	**	6,820,000	3,000,000	3,820,000	620,000	272,720
	***	**	6,050,000	2,723,000	3,327,000	550,000	247,540
	***	**	5,500,000	2,500,000	3,000,000	500,000	227,270
	***	**	6,820,000	3,000,000	3,820,000	620,000	272,720
소계	**12명**	**-**	**73,980,000**	**33,300,000**	**40,680,000**	**6,725,454**	**3,027,210**

연도	사업 대상자	면적 (㎡)	사업비 교부결정 총액			부가 가치세액(c)	과다지급액 (c×보조율*) *(b/a)×100
			합계(a)	보조금(b)	자부담		
2021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6,490,000	2,000,000	4,490,000	590,000	181,810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6,930,000	2,000,000	4,930,000	630,000	181,810
	***	**	5,060,000	2,000,000	3,060,000	460,000	181,810
	***	**	4,840,000	2,000,000	2,840,000	440,000	181,810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6,820,000	2,000,000	4,820,000	620,000	181,810
	***	**	5,940,000	2,000,000	3,940,000	540,000	181,810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6,930,000	2,000,000	4,930,000	630,000	181,810
	***	**	7,128,000	2,000,000	5,128,000	648,000	181,810
	***	**	7,810,000	2,000,000	5,810,000	710,000	181,810
	***	**	9,900,000	2,000,000	7,900,000	900,000	181,810
소계	**15명**		**106,898,000**	**30,000,000**	**76,898,000**	**9,718,000**	**2,727,150**

주: 과다지급액(부가가치세액(c)×보조율(b/a×100))) 원 단위는 절사함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농업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과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향상, 부산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제공과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를 통해 도시농업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 ◈◈◈◈◈”(이하 “로컬푸드사업”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로컬푸드사업은 2021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사업비 35,000,000원을 편성하여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로컬푸드 사업 지원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총사업비			예산과목	추진단체	보조금 교부일자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1	35,000	35,000	-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 ☆	2021.5.6.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舊 지방재정법 분리)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항 및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

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실적 보고)에 따라 시장은 실적보고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2021. 1. 19. 자에 “2021년 도시농업! 로컬푸드로 꽃을 피우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 1. 20. 자에 “2021년 시행지침 알림” 공문을 ☆에 통보하면서 사업실행계획서를 2021. 2. 27.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에서는 2021. 2. 23. 자에 “2021년 실행계획서(⊙⊙⊙ ◈◈◈◈◈)” 제출한 이후 2021. 4. 2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2021. 12. 29. 자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최초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시농업워크숍(4월, 9월 총 2회 계획)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실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시 ♠과에 사업변경 승인도 받지 않았다.

[표 2] 사업실행계획 대비 정산보고 내역 비교

(단위: 천원)

예산집행계획				정산보고서			비고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	세부사업	내역	예산	
상반기	●●	인건비	4,190	상반기 ◇◇ (6.9)	인건비	2,190	○○ 미실시
	○○	홍보비, 사업집행비	1,850		사업집행비	9,700	
	◎◎	사업집행비	11,410		사업진행비	5,410	
	소계	-	17,500	소계	-	17,300	
하반기	●●	인건비	4,190	하반기 ◇◇ (11.19)	인건비	1,890	○○ 미실시
	○○	홍보비, 사업집행비	1,850		사업집행비	11,130	
	◎◎	사업집행비	11,410		사업진행비	4,680	
	소계	-	17,500	소계	-	17,700	-
합계	-	-	**35,000**	**합계**	-	**35,000**	-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추진 일정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로컬푸드 재배”, “워크숍 개최”가 있으나 정산보고서를 보면 상·하반기 로컬푸드나눔 행사로 보조금 예산을 일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추진일정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표 3]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일정 내역

사업명		202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구성 및 회의			○		○		○		○	○	
세부 행사 (1)	**봄 로컬푸드 재배**	○	○	○	○						
	봄 워크숍 개최			○							
	봄 ** 나눔활동				○						
세부 행사 (1)	**가을 로컬푸드 재배**					○	○	○	○		
	가을 워크숍 개최							○			
	가을 ** 나눔활동								○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과에서는 ☆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계획과 달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정산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 처리하여 당초 교부 목적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고서 작성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

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에서 사업 추진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내역을 확인 한 결과 ① 지출 증빙자료 미비 및 원천징수 누락 ② 계약절차 미준수 ③ 로컬푸드 나눔행사 후 물품 배부내역 확인불가 ④ 보조금 이자발생액 미반납 등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가 부실함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 조치 없이 정산 처리하였다.

1) 지출증빙자료 미비 및 원천징수 누락의 경우

☆에서는 상반기 로컬푸드나눔(6.9), 하반기 로컬푸드나눔(11.9.) 행사를 추진하면서 참여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없이(지출결의서상 증빙 자료에 계좌이체 통장사본이라고 작성해놓고도 통장 사본 미 첨부) 지출하였다.

아울러 아래 [표 4]와 같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자 서명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인건비(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

[표 4] 지출증빙 부적정 및 원천징수 누락자 현황

(단위: 원)

지출일	지출내역	수령자	지급액	비고
2021.6.12. (상반기 로컬푸드나눔)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사업진행비	***	720,000	-
	사업진행비	***	720,000	-

지출일	지출내역	수령자	지급액	비고
2021.11.23. (하반기 로컬푸드나눔)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인건비	***	150,000	-
	사업진행비	***	720,000	-
	사업진행비	***	720,000	-

주. 지출증빙서류에 수령자 통장사본 및 수령자 참여여부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미첨부, 원천징수 누락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정산보고서)

2) 계약절차 미준수 등의 경우

☆에서는 상·하반기 로컬푸드나눔 행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행사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 전자세금계산서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업체명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21.6.15	***	*** **** 행사용역	13,736,364	1,373,636	15,110,000	사)☆
2021.11.23	***	*** **** 2차	14,364,655	1,436,466	15,801,121	사)☆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정산보고서)

3) 로컬푸드 나눔행사 후 물품 배부내역 확인불가의 경우

☆에서는 상·하반기 로컬푸드행사로 “어린이 요리체험교실 및 양육시설에 먹거리 나눔 행사”를 주요 행사로 추진하였다. 어린이 요리체험교실의 경우 김치담그기를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였고, 아동 양육시설에는 먹거리 나눔(김장김치) 전달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정산보고서에는 행사 후 아동양육시설의 만족도 조사(총 20개소)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기관별 물품 배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표 6] 사)부산☆ '⊙⊙⊙ ◈◈◈◈◈' 만족도 조사(부분발췌)

연번	시설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농산물(김치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농산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촉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농산물(김치 등)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만족하셨습니까?	⊙⊙⊙ ◈◈◈◈◈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한가요?
1	***	***	부산광역시 서구	051-***-****	만족	매우 도움	매우 만족	매우 필요
2	***	***	부산광역시 동래구	051-***-***	매우 만족	매우 도움	매우 만족	필요

주. 20개소 아동양육시설에 개별 배부 내역 없이 만족도 조사만 제출되어 있음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정산보고서)

4) 보조금 이자발생액 미반납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이 4,121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0원으로 제출하였음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정산 확정하였다.

[표 7] 사업비 지출 정산보고내역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금액	비율(%)			
계	35,000,000	35,004,121	100	0	**4,121**	-
지방보조금	35,000,000	35,000,000	100	0	-	-
자부담	-	-	-	-	-	-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정산보고서)

그 결과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이후 정산검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확정 처리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워크숍 개최는 코로나19로 상·하반기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행사참여자 서명자료 및 계좌 사본, 계약서, 소외계층시설 배부(표본 전화 확인)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이자발생액 미반납의 경우에는 2022년도 제2차 추경('22.9월)에 집행잔액 편성하여 반납 처리 중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당초 계획과 달리 승인 없이 비대면 워크숍 추진 및 하반기 추진 내용 근거자료 미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1차 행사(6.10,), 2차 행사(11.19.)를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2021.5.27. 일괄 계약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 등)하고, 아울러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산 심사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보완 요청 및 확인 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위의 소명자료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납부 및 보조금 이자발생액 미반납액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텃밭정원 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과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도심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텃밭 정원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관리사의 녹색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 ◈◈◈◈ 조성사업(이하 “텃밭정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텃밭정원 사업은 2021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사업비 100,000,000원을 편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인 □□□(이하“□”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 ◈◈◈◈ 조성지원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총사업비			예산과목	추진단체	보조금 교부일자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21	100,000	100,000	-	민간경상 사업보조	□ (비영리민간단체)	2021.4.30.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텃밭정원 참여자 활동비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고서 작성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텃밭정원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장소 확인 및 설치된 작물 사후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관리단체(□ 소속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텃밭정원 관리 참여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참여자 개인별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별 계좌로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권역별 담당 대표자 개인 계좌에 활동비를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7명에게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래 [표 2]와 같이 총 18,368,000원(매월 328,000원 × 8회 지급)을 지급하였다.

[표 2] 텃밭정원 사업 활동비 지급 명단

(단위: 원)

성명	담당구역	금액(월)	총지급액(8회)	소속
***	부산진구	328,000	2,624,000	***
***	남구	328,000	2,624,000	***
***	해운대구(반여)	328,000	2,624,000	***

***	해운대구(재송)	328,000	2,624,000	***
***	해운대구(반송)	328,000	2,624,000	***
***	수영구	328,000	2,624,000	***
***	연제구	328,000	2,624,000	***
7명	**합계**	-	**18,368,000**	-

주: 참여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권역별 구역담당자 대표 개인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권역별 대표자가 실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1]하였음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활동비 지급 증빙자료인 텃밭관리 참여자 활동일지를 살펴보면 1일 8시간 동안 총 4개소에서 5개소를 방문(한 개소당 2시간 내외)하였다고 제출하면서 활동내역에는 설치장소 확인 또는 설치된 작물 관리(상추 등 잎채소 성장 상태 살피기, 물주기, 가꾸기 요령 설명 해주기 등)라는 내용으로만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고 활동일지 외에 실제 활동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지 않아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와 텃밭을 설치한 이후 참여자의 활동에 따른 텃밭의 관리 상태 등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에서는 추가 보완 자료 없이 권역별 대표 담당자 활동일지 서명만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에서는 담당구역 대표자 개인 계좌로 활동비를 일괄 입금 후 실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미흡함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 없이 정산 확정 처리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지방계약법 절차 미준수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담당구역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후 실 참여자 개인별로 지급한 소명자료 확인 제출(♠과)

그리고「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계약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地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비를 적정 지출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21. 5. 10. 자에 개최한 “2021년 □ 5월 회의” 에서 해당 사업의 텃밭 설치 업체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을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표 3]와 같이 2021. 5. 25. 자에 총 70,000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계약서(부분 발췌)

계약자	발주자	□
	시공업체	△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정)
	지급방법	· 사업비 : 70,000천원 · 총 7개 구역의 사업이 각기 완료되면 현장 실사 후 체크카드로 결제 한다
	기타사항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A/S(사후관리)기간 2년
계약일	2021년 5월 25일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수의계약 시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5천만 원[2]이하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임을 증빙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검토 및 확인서류 없이 수의계약을 일괄 체결하였다.

또한 □는 2021. 5. 25. 자에 계약한 금액은 총 70,000천 원이나 시공업체에 총 지급한 금액은 계약 금액보다 5,836천 원을 초과한 총 75,836천 원(텃밭조성 설치비로 총 10회에 걸쳐 지급)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계약변경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적합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계약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텃밭 조성 활동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수의계약 업체인 △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소명자료로 추가 제출하면서 관련 사항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조례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 증빙자료 미흡 등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보완 요청 및 확인 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및 확인 없이 정산을 확정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위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3항4호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한시적 특례 적용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상향)「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1] 일환인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2](이하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표 1]의 보조금 예산을 지역 내 농민 등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예산(2019~2021)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세출 예산과목	사업 재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653,124	123,952	92,964	91,964	342,244
2020			893,956	173,747	130,310.5	130,310.5	459,587
2021			2,295,704	453,843	340,382.5	340,382.5	1,134,635

※ 자료 :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2)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설치비 일부 지원, 국비:시비:구비:자부담(20:15:15:50)

제4조 및 제8조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3]를 등록하여야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본규정」 제35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변경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 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중요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기본규정」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4]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본규정」 제78조,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사업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등[5]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기본규정」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4) 환수금액 = 보조율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 이득금]
5)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따라서 ◆◆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해 지원 목적 외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사후관리기간 내의 중요재산을 승인권자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감사기간(2022. 9. 26. ~ 10. 7.) 중 2019년 ~ 2021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유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일부는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음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승인권자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배우자)가 사업을 대행하는 등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 인계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내역(2019~2020)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자명	지원내역						부적정 상세		부적정 사유
		총액	국비	시비	구비	융자	자부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보조사업 대행 여부	
2019	***	11,000	2,200	1,650	1,650	-	5,500	미등록	○(배우자)	사전 승인 ×
	***	22,106	4,421	3,316	3,316	-	11,053	미등록	○(배우자)	사전 승인 ×
	***	20,000	3,702	2,776	2,776	-	10,746	미등록	×	경영체 미등록
2020	***	25,804	6,203	4,652	4,652	-	16,500	미등록	×	경영체 미등록
	***	12,784	3,067	2,297	2,297	-	8,190	미등록	○(모)	사전 승인 ×

자료: ◆◆구 확인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사업자가 「기본규정」 제77조, 제78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검토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1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농업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규정」 제63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사전승인 없이 재투자된 경우에는 환급금 재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발생한 환급금을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환급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2. 9. 26. ~ 10. 7.)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 중 일부는 사전에 ◆◆구로부터 사업변경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재투자하였다.

[표 3] 사업비 정산 부적정 내역(2019)

(단위: 천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내역								환급금 재투자	부적정 사유
		당초 사업비					환급금				
		국비	시비	구비	융자	자부담	총액	보조	자부담		
2019	***	24,200	18,150	18,150	36,300	24,200	5,183.5	2,591.75	2,591.75	×	미환급(미공제)
	***	4,886	3,664	3,664	-	15,034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2,788	2,091	2,091	-	9,607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1,168	876	876		3,087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4,874	3,655	3,655	-	13,976	-	-	-	○	재투자 사전승인 ×
	농업법인 ***	3,380	2,535	2,535	-	9,548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3,211	2,408	2,408	-	8,970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3,702	2,776	2,776	-	10,745	-	-	-	○	재투자 사전승인 ×

※ 자료 : ◆◆구 감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구(⊙과)는 「기본규정」 등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재투자한 환급금은 보조금 사후 정산 및 지급과정에서 불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정산서상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환급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구 사전승인 없이 사업에 재투자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보조사업자의 과세유형(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에 관계없이 가능함에도 면세사업자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 조치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면세사업자)의 시설설치 용역 재료비에서 발생한 5,18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2,591,000원 상당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시 사전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환급 미조치 건은 환급 절차를 이행하고 발생 환급액 중 보조금분 2,591천 원 상당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광역시 ☆☆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1] 보조사업자로 ♤농협을 선정하여 2019년 군비 80,000,000원, 2020년 군비 80,000,000원, 2021년 군비 78,733,000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보조사업 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신설,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적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보조금 집행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은「부산광역시 ☆☆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2019년 ~ 2021년 기간 지역농협에 면세유 지원 대상 농기계를 등록

1) 농업인 면세유 구입 관련 농가 부담액 ℓ당 100원 지원

한 관내 거주 농민(농가) 대상으로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군과 보조사업자인 ♤농협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목적이 적정한지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합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정산 과정에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농협과 상·하반기 각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점검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농협은 2019년과 2020년 사업 완료 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환” 문서를 ☆☆군에 제출하여 앞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였으며, 2021년에는 사업 완료 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문서를 ☆☆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사후 신청하였다.

2019년 ♤농협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환” 문서에는 보조금 지원 농민(농가) 수와 총공급량, 지원금액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2020년 ♤농협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환” 문서와 2021년 ♤농협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문서에는 보조금 지원 농가주(법인)명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상 농기계, 면세유 공급량과 지원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협에서 ☆☆군에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보조금을 수령한 개별 농민(농가)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군 거주 농민(농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군($과)은 2019년 ~ 2021년 기간 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농협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농민(농가)이 ☆☆군 거주 농민(농가)임을 확인·증빙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실적 및 집행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정산 완료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표 1]과 같이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농협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1] 면세유 지원사업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2019~2021)

(단위: 호, ℓ,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지원 상세			부적정 사유	
		지원 농가	공급량	지원금액	합동점검	
					계획수립 여부	실시 여부
2019	♤농협	2,652	754,296	75,429,600	수립(⊙과-****호)	미실시
2020		1,325	747,622	74,762,200	수립(⊙과-****호)	미실시
2021		1,258	787,333	78,733,300	수립(⊙과-****호)	미실시

자료: ☆☆군 감사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19년 ~ 2021년 기간 ☆☆군에서 추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및 자체계획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은 이에 대해 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하 “공급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유업무로 공급요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농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산관리시스템을 공유·등록하여 부적합 대상자를 사전 차단하고 있는 점과 ②「공급요령」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이 실시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자체점검(합동점검)으로 갈음하고 있는 점을 미이행 사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면세유 구입 비용 추가 경감을 위한 ☆☆군 보조사업으로서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 지원 정책과는 추진 주체, 목적, 적용 법령 등이 다른 점과 ② ☆☆군이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점검(합동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없는 점으로 판단할 때 ☆☆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유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정산업무 전반이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개 선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는「농촌진흥법」 및 2020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인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1]” 의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역 내 농민(2개 농가)을 선정하여 사업비 총 80,000,000원(국비 40,000,000원, 시비 40,000,000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1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농업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63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과채류에 적합한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 지원으로 재배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목적 사업

한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059호, 2013. 11. 08.)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 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 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는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보조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2. 10. 17. ~ 10. 21.) 중 2020년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일부 보조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재료비 집행 내역에 다겹 보온재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시공업체에 재료비, 이윤, 설치비 등 명목으로 총액 40,000천 원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표 1] 부가가치세 환급 미검토 사업 내역(2020)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공사 상세						
	사업비			대금 청구 상세		대금 지급	
	총액	국비	시비	비 목	금 액	지급방법	비 고
***	40,000	20,000	20,000	재료비 (환급 자재 포함)	26,951,496	계좌이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총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목 기재 ×)
				기업이윤	2,412,140		
				설치비	7,000,000		
				부가가치세	3,636,364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팀)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에 부수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059호, 2013. 11. 08.)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시설 용역에 다겹 보온재 등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환급 검토 없이 정산완료 되었다.

그 결과 농업용 기자재 구입 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2,695천 원 상당에 대한 환급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상기 환급 미검토된 2,695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액에 대해 환급 조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② 앞으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용역비 등 집행 내역 중 재료비(농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환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아래 [표 1]과 같이 총 240개 사업에 13,343,416천 원의 국비·시비·군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량	재원					비고
			합계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	
계		240개 사업	17,584,741	4,612,061	2,649,862	6,081,493	4,241,325	
201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8개 사업	5,972,460	1,532,209	909,037	2,034,151	1,497,063	
202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5개 사업	5,981,624	1,568,532	908,814	2,076,593	1,427,685	
202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7개 사업	5,630,657	1,511,320	832,011	1,970,749	1,316,577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고 절차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따르면 군수는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공문서의 종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에는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대상기관, 응모방법, 선정절차,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2019~2021년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하면서「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등이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 명의의 별도 공고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연도와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고문서를 일반인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농정시책 지원사업 안내서」라 하여 안내 책자만 배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해야 할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진행되었다.

3. 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舊 지방재정법

분리,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부산광역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공모로 신청한 대상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과)에서 사전 감사자료로 제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 지침 및 ◐◐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3년간 ◐◐군($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122개 사업 중 [표 2]를 제외한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 대상이거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에 따라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로 신청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부서($과) 내부 검토만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군($과)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준수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표 2] 보조금관리위원회 미심의 내역(2019~2021)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 재원 구분	사업비	보조사업자	비고
계	11개 사업		1,245,342		
2019	친환경과채류 시설재배 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시군비	13,988	*** 외 7인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사업	시군비	29,544	*** 외 4인	
	원예시설 현대화(품질) 사업	국시군비	191,114	*** 외 11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시군비	96,152	*** 외 9인	
	작목반 농기계 지원	순수군비	15,000	*** 외 6인	
2020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국시군비	146,934	*** 외 8인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사업	시군비	23,368	*** 외 6인	
	원예시설 현대화(품질) 사업	국시군비	401,472	*** 외 25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시군비	100,492	*** 외 10인	
2021	원예시설 현대화(품질) 사업	국시군비	173,678	*** 외 7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시군비	53,600	*** 외 5인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군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공고, 심의 등 법적 절차 준수 및 보조사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보조금 총괄부서(기획감사실)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이하 "♣"라 한다)는「농촌진흥법」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1인에게 토마토 통합생장관리시스템[1] 구축을 위한 노트북, 워크스테이션[2], 딥러닝 서버[3] 구매 등의 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세출 예산과목	재원				비고
			합계	국비	시비	자부담	
202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22,500	22,500	5,000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계약법령 준수 교부조건 미부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토마토농장 내 레일에 달린 장비로 24시간 녹화한 토마토 생육데이터를 통해 수분·병해충 관리 등 자동형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및 토마토 생산효율 증대

2) 개인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성능 컴퓨터(하드웨어)로 일반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빠름

3)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소프트웨어)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물품 계약은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 구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서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를 수의로 계약할 때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자체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예산 과다 집행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계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팀)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자는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 물품을 동일업체에서 구매하면서 추정가격에 대한 계약방법(수의계약 또는 입찰 여부)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등 계약법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수의계약(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이 가능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인 견적 제출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절

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단순히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아래 [표 2]와 같이 회당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여 동일 업체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총 3회(26,400,000원) 구매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2인 견적 수의계약[4]으로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최저낙찰률(88%) 금액(23,232,000원)보다 3,168,000원 상당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 집행내역(2020)

(단위: 원)

지출일	지출액	지출내역	용도	공급처	비고
2020. 5. 13.	2,630,000	노트북 2대	상시 모니터링용	***-①	
2020. 5. 13.	10,500,000	워크스테이션, 딥러닝 서버	데이터 분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②	
2020. 10. 25.	13,270,000	데이터저장시스템, 녹화장치	식물 생육 데이터 저장 및 영상녹화	***-③	
2020. 7. 24.	19,400,000	로봇 모듈 2기	생장관리형 로봇 모듈	***	
2020. 10. 27.	4,211,460	레일 설비	토마토농장 내 움직이는 레일 설비	***	
합 계	50,011,460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정보공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처분제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4) 물품을 구매하려는 곳이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서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e나라도움”이라 한다) 공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는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팀)는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자체 추진계획에 중요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였고, 보조사업자가 토마토 통합생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딥러닝 서버 등 장비에 대한 중요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중요재산(50백만 원) 현황을 e나라도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 및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고 중요재산의 관리 주체, 장비 상태, 사용 여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광역시 ♠과(이하 “시 ♠과”라 한다)로부터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등을 위해 생활(주거)공간인 주택가 골목, 옥상, 마당 등에 상자텃밭[1](이하 “텃밭”이라 한다)을 조성 및 보급하는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비				지원 건수	비고
			합계	시비(40%)	구비(40%)	자부담(20%)		
2019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12,000	12,000	6,000	64건	텃밭상자, 상토, 모종, 매뉴얼 등 세트 보급 (5만원/1세트)
2020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4,000	4,000	2,000	12건	
2021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500	5,000	5,000	2,500	15건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구는 시 ♠과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자별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텃밭 설치 후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구는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저수통 내장형 자동급수 화분(650×450×450㎜): 자동물보충시스템이 결합되어 손쉬운 물관리가 가능한 화분

[표 2]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과정

계획 수립	⇨	신청자 모집	⇨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	보조 사업자 선정	⇨	상자텃밭 설치	⇨	보조금 청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지급
▽▽구		▽▽구		구민		▽▽구		▽▽구		구민		구민		▽▽구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업완료보고서 적정성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당초 교부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교부 결정 내용에

맞지 않게 사업이 추진되었을 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구(◆과)에서 추진한 「2019년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는 총 64명이며, 이 중 가족관계로 확인되는 "*** 등 5명"은 2019년 3월 6일(***, ◎◎◎, @@@ 신청)과 2019년 6월 14일(◈◈◈, ▼▼▼신청) 2차례에 걸쳐 *** 소유의 "▽▽구 **동 **-**번지 등 6개소"에 1인당 텃밭 20세트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각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구 **동 **-**번지 등 6개소"의 소유자인 ***를 제외한 4명은 사업신청서와 함께 ***의 동의를 득한 건축물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구는 이를 검토하여 *** 등 5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 등 5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사업완료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각자 다른 장소에 텃밭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5명 모두 ***의 설치 신청장소인 "**동 **-**번지 건물 내·외부"에 텃밭 100세트가 쌓여 있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부적정 추진 내역

구분		***	◎◎◎	@@@	◈◈◈	▼▼▼
가족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	*** 모
사업신청일		2019. 3. 6.	2019. 3. 6.	2019. 3. 6.	2019. 6. 14.	2019. 6. 14.
사업완료일		2019. 4. 16.	2019. 4. 16.	2019. 4. 16.	2019. 7. 12.	2019. 7. 12.
사업비 (보조금+자부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설치수량		20세트	20세트	20세트	20세트	20세트
설치장소	신청	****동 **-**** (옥상, 마당, 베란다)	****동 **-**** (마당)	****동 **-**, **** (마당)	****동 **-**** (옥상)	****동 **-**** (옥상)
	소유자	***	***	***	***	***
	완료	****동 **-** 건물 내부 및 외부** ▷ *** 신청 설치장소				

주: 1인당 사업비 100만원(보조금 80만원 + 자부담 20만원) ※ 상자텃밭 설치업체: ㈜***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 등 5명이 사업완료보고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텃밭 조성 후 사진”은 텃밭 조성이 완료된 모습이 아니라 “**동 **-**번지 건물 내부”에 텃밭상자와 전용상토가 쌓여있는 모습이었으며, *** 등 5명 모두 텃밭 “조성 중”과 “조성 후” 모습이 동일·유사한 사진을 제출함에 따라 텃밭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구는 보조사업자인 *** 등 5명이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하여, *** 등 5명이 각자 다른 장소에 상자텃밭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5명 모두 ***의 신청장소에 텃밭세트가 쌓여있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보조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시정 조치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없이 보조금 총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사후관리기간 내 현장점검 및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 수립한 「2019년 도시농업 육성 및 텃밭 조성계획」에서 정한 텃밭의 사후관리기간[2]은 3년이며, 기간 내에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텃밭 및 작물의 재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보조사업자가 텃밭 운영을 포기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할 시에는 사안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시 ♠과는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텃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에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텃밭에 대해 사후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3]을 각 구·군에 발송하였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농작

2) 2019년 조성 텃밭의 사후관리기간 3년, 2020년부터 조성된 텃밭의 사후관리기간 5년(시 ♠과 사업지침)

물 재배 및 텃밭 시설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구는 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지원 목적과 취지에 맞게 텃밭을 적절히 관리·운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텃밭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시정 조치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2019년, 2020년에 연 1회 이상의 현장점검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2019년, 2020년에 설치 지원한 텃밭 총 78개소[4]를 현장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장점검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9년에 *** 등 5명에게 1인당 20세트씩 보급한 텃밭 총 100세트 중 ***에게 보급한 텃밭 20세트의 일부만 **동 **-**번지 건물 2층(*** 신청장소)에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는 2021년 현장점검을 통해 ***의 설치 신청장소에, ***에게 보급한 텃밭 수량 20세트 중 일부만 조성되어 있고, ***를 제외한 4명에게 보급한 수량 80세트는 조성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시정 조치하여 텃밭을 적정 설치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미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감사일 당시는 ▽▽구에서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한 사후관리기간(3년, 2019~2021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으나, 2021년 현장점검 당시 조성되지 않았던 텃밭의 추가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22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 소유의 ▽▽구 **동 **-**번지 건물 1층의 폐업한 가게 내부에 텃밭상자와 전용상토의 일부가 여전히 조성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도시텃밭(옥상·지상·상자텃밭 등) 농작물재배 및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시 ♠과-11606(2019.11.27.)]
4) 2019년: 65개소 [상자텃밭 64, 학교텃밭 1(**초)] / 2020년: 13개소 [상자텃밭 12, 학교텃밭 1(**중)]

그 결과 ▽▽구는 사후관리기간 내 텃밭 점검 및 관리를 소홀하여 보조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텃밭을 적정 설치 및 운영하도록 시정 조치하지 않았고, 텃밭 미설치 수량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아 *** 등 5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총 400만원 중 ***를 제외한 4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320만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는 2019년, 2020년에 연 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이를 바로 잡기위해 20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 실시 전인 2021년 6월 7일 ***가 2021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9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 등 5명의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며, 2021년 6월 28일 텃밭 설치장소를 현장점검 하였다.

현장점검 당시 *** 소유의 **동 **-**번지 건물 1층 가게 내부에 텃밭상자와 전용상토가 쌓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상자텃밭을 적정 설치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기간 내 적정 설치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렸으며, 2021년 6월 30일에는 ***와 함께 **동 **-**번지 건물 2층의 내부를 현장점검하여 시정 조치 내용을 재안내함과 동시에 2021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렸다.

한편 ***는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나 이는 텃밭 운영의 포기 또는 시설물 철거 등으로 보조금을 악용하기 위함은 아니었으며, 텃밭 설치장소를 수리·보수하여 마당과 옥상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시정 기간 내 조성 완료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는 당시 시 ♠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자문을 구하였고,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지원 목적과 함께 현실적으로 ***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사후관리기간 내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보다는 지도점검과 현장계도로 마무리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는 2019년, 2020년 현장점검 미실시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2021년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보조사업자 *** 등 5명에 대해 시정 조치한 점, 상위 기관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한 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시 사업완료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적정 지급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자텃밭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미사용**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과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과(이하 "♠과"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50%)에 시비(50%)를 매칭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이하 "◈"이라 한다.)의 "공동방제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 원)

보조사업자	지원내용	예산과목	사업비			
			연도	합계	국비(50%)	시비(50%)
◈◈◈ 공동방제단 (2개반)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96,402	48,201	48,201
			2020년	100,510	50,255	50,255
			2021년	101,026	50,513	50,513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의 공동방제단 편성기준[1]에 따라 2개반(방역전담인력 2명, 소독차 2대)을 구성하였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2]와 가금거래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연간 24회씩 상시 소독을 실시하였다.

1)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은 시·군별 1개 방제단 이상 구성, 방역전담인력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
2) 소규모 농가: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표 2]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 실적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시대상	170호 (농가 167, 전통시장 3)	170호 (농가 167, 전통시장 3)	165호 (농가 163, 전통시장 2)
총소독량	4,080회	4,080회	3,960회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제1항 및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과는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자인 ◈이 농림축

산식품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하는지, 보조금 전용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지, 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방제단의 보조사업비 예금거래 내역서와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금 전용 계좌[3]를 설정하였으나, ♠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아래 [표 3]과 같이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표 3]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보조금 일괄 인출 내역

(단위: 천 원)

거래일자	입금	인출	거래기록사항	비고
2019. 1. 25.	23,609		♠과	1분기 보조금 교부
2019. 1. 25.		23,609	♠과	-
2019. 4. 19.	24,591		♠과	2분기 보조금 교부
2019. 4. 24.		24,591	♠과	-
2019. 7. 4.	24,102		♠과	3분기 보조금 교부
2019. 10. 16.	24,100		♠과	4분기 보조금 교부
2019. 12. 3.		48,202	♠과	-
합계	96,402	96,402		

주: 예금거래내역서 중 2019년 부분 발췌 작성(2020년, 2021년도 일괄 인출 내역은 [별첨]에 작성)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은 공동방제단 운영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회계 처리함에 따라 인건비, 소독차량 리스료, 소독약품 등 물품구입비 집행 시에는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여 집행하지 않았고, 소독차량 유류비, 수리비 집행 시에는 보조금 전용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전용 카드가 아닌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97,938천 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사후 정산하였다.

3) ◈◈◈ ***-****-****-**, 보통예탁금, 무이자

[표 4]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사후 정산 내역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인건비	50,096,000	51,533,000	52,280,000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정액지원 ▪ 방역요원(기간제근로자) 2명
리스료	17,439,086	17,801,840	17,771,540	▪ 차량 2대 리스료 및 보험료 (** 2대, ** 주식회사)
유류비	5,683,914	5,857,460	6,010,300	-
수리비	2,634,000	3,317,000	4,832,600	-
소독약품	12,615,000	14,608,000	12,020,000	-
소모품	7,934,000	7,392,700	8,111,560	▪ 방역복, 마스크 등 구입
합계	96,402,000	100,510,000	101,026,000	※ 2019~2021년 사업비 총 297,938천 원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2명의 인건비[4]를 ◈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 자체 자금으로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아래 [표 5]와 같이 연말에 보조금 정산의 명목으로 사업계획에 배정된 인건비만큼 전산 처리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총 153,909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5] 공동방제단 인건비 사후 정산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계획	집행	정산		방역전담인력 현황
	배정액	실지급액	정산액	일괄 인출 일자	
합계	153,909	215,262	153,909	-	-
2019년	50,096	69,800	50,096	2019. 12. 23.	▪ 채용인원: 2명(***, ***) ▪ 채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업 무: 공동방제단사업(방역), 비용집행보조
2020년	51,533	78,428	51,533	2020. 12. 22.	
2021년	52,280	67,034	52,280	2021. 12. 8.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정산 검토를 소홀하여 보조사업자인 ◈이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보조금 전용 계좌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회

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에 따르면 공동방제단 소요인력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을 별도 채용할 수 있고, 정규직 등을 방역전담으로 운영 가능하며, 연간 정액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하되, 부득이 보조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시 초과분은 ◈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계 처리함에도 지도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과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적절히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며,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후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적극 지도·시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용 현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인 ◈이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 정 요 구

제 목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에 적합한 재해예방 규격하스를 설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현황

(단위: 천원)

보조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건수
		연도	합계	시비	군비	자부담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 0.2ha(2,000㎡) 이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50%) - 0.2ha이상: ㎡당 100,000원 지원 - 0.1~0.2ha미만: ㎡당 50,000원 지원	2019년	400,000	100,000	100,000	200,000	2건
		2020년	200,000	50,000	50,000	100,000	2건
		2021년	400,000	100,000	100,000	200,000	-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 330㎡ 이상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50%) - 지원한도: 5,000,000원	2019년	50,000	-	25,000	25,000	5건
		2020년	20,000	-	10,000	10,000	1건
		2021년	20,000	-	10,000	10,000	2건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

고) 및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과)은 아래 [표 2]와 같은 절차로 “내해재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추진 과정

계획 수립	⇨	공고 및 사업추진 알림	⇨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착공승인 신청	⇨	착공승인 및 알림	⇨	준공 및 보조금 청구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군		●●군		농가		●●군		농가		●●군		농가		●●군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군은 보조사업자의 착공승인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 검토하는 단계에서 검토보고서상에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인 경우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 정산 조치, 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추진 가능”이라고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의 착공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재투자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군의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부담에 더하여 재투자하였으며, ●●군은 이를 재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없이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결과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승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율만큼 공제 가능한 금액 총 10,270천 원을 과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검토 소홀에 따른 보조금 과지급 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지원 연도	대상자	면적 (㎡)	사업비			보조율 (c=b/a)	부가세 환급금(d)	과지급액 (d×c)
				합계(a)	보조금(b)	자부담			
합 계									**10,269,807**
소 계									8,462,789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2019	***	1,008	117,517,000	50,400,000	67,117,000	42%	5,057,150	2,124,003
		***	1,190	125,949,000	59,500,000	66,446,000	47%	5,176,965	2,433,174
	2020	***	1,008	109,285,000	50,400,000	58,885,000	46%	4,572,965	2,103,564
		***	1,013	101,000,000	49,600,000	51,400,000	49%	3,677,650	1,802,049
소 계									1,807,018
소규모 비닐 하우스 설치사업	2019	***	330	13,364,000	5,000,000	8,364,000	37%	676,590	250,338
		***	330	13,364,000	5,000,000	8,364,000	37%	676,590	250,338
		***	330	10,578,000	5,000,000	5,578,000	47%	566,636	266,319
		***	330	13,364,000	5,000,000	8,364,000	37%	676,590	250,338
		***	330	13,364,000	5,000,000	8,364,000	37%	676,590	250,338
	2020	***	330	14,921,000	5,000,000	9,921,000	33%	818,110	269,976
	2021	***	330	10,032,000	4,787,300	5,244,700	49%	457,400	-
		***	330	11,001,650	5,000,000	6,001,650	45%	598,600	269,370

주: 2021년 대상자 ‘***’에게는 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212,700원)을 제외하고 지급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군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립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현황을 기록·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요재산의 취득·변동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2019년, 2020년에 아래 [표 4]과 같이 2017년부터 보조금으로 설치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총 22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체계적인 사후점검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12월 29일 ●●군 홈페이지에 “농업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내역 공고(부산광역시 ●●군 공고 제2015-2045호)”를 게재한 이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변동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소홀, 취득·변동현황 미공시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로 중요재산의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및 관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점검 소홀 및 미공시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연도	성명	사업대상지	면적(㎡)	사업비	보조금	준공일	점검일	공시여부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2017	***	**읍 ***	1,770	188,500	88,500	17.11.6.	17.11.6. 21.11.17.	X
	2018	***	$$면 ***	1,150	115,000	50,000	18.5.28.	18.5.28. 21.11.25.	X
		***	$$면 ***	1,890	189,000	50,000	18.8.1.	18.8.28. 21.11.25.	X
		***	**읍 ***	2,040	199,870	94,846	18.7.26.	18.7.26. 21.11.17.	X
	2019	***	$$면 ***	1,190	125,946	59,500	19.6.27.	19.6.27. 21.11.25.	X
		***	$$면 ***	1,008	117,517	50,400	19.6.27.	19.6.27. 21.11.25.	X
	2020	***	&&면 ***	1,013	101,000	49,600	20.12.18.	20.12.18. 21.12.3.	X
		***	**읍 ***	1,008	109,285	50,400	20.12.8.	20.12.8. 21.11.17.	X
소규모 비닐 하우스 설치사업	2017	***	&&면 ***	330	10,552	4,620	17.6.13.	17.6.13. 21.12.3.	X
		***	**읍 ***	330	11,893	4,620	17.12.5.	17.12.5. 21.12.3.	X
	2018	***	**읍 ***	330	11,987	5,000	18.11.15.	18.11.15 21.12.3.	X
		***	**읍 ***	330	11,200	5,000	18.11.26.	18.11.26. 21.12.3.	X
		***	$$면 ***	330	11,987	5,000	18.12.21.	18.12.21. 21.11.25.	X
		***	$$면 ***	330	11,987	5,000	18.12.21.	18.12.21. 21.11.25.	X
	2019	***	**읍 ***	330	13,364	5,000	19.6.27.	19.6.27. 21.11.17.	X
		***	$$면 ***	330	13,364	5,000	19.6.27.	19.6.27. 21.11.25.	X
		***	$$면 ***	330	10,578	5,000	19.7.31.	19.8.21. 21.11.25.	X
		***	**읍 ***	330	13,364	5,000	19.12.23.	19.12.23. 21.11.17.	X
		***	**읍 ***	330	13,364	5,000	19.12.23.	19.12.23. 21.11.17.	X
	2020	***	$$면 ***	330	14,921	5,000	20.9.11.	20.9.11. 21.11.25.	X
	2021	***	**읍 ***	330	11,002	5,000	21.12.18.	21.12.23.	X
		***	%%읍 ***	330	10,032	4,787	21.7.20.	21.7.22.	X

자료: ●●군 제출자료(관리대장)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군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내재해형 농업시설 및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발생한 10,270천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가능액의 회수 여부를 자체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②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군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고,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공시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군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군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따라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영농조합법인(이하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발효사료자재 지원사업”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9~2021년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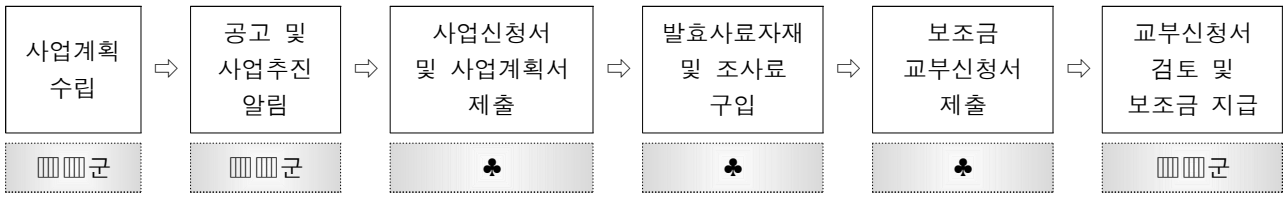
보조사업명	지원내용	보조사업자	사업비	재원
발효사료자재 지원사업	- 발효사료자재(밀기울[1]) 구입 지원 - 구입비의 50% 지급	♣♣♣ 영농조합법인 (대표: □)	80,000	군 비 50% 자부담 50%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 조사료(볏짚사일리지[2]) 운반비 지원 - 1롤(500kg)당 1만원 지급		20,000	군 비 100% 자부담 -

주: 1.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소맥피). 배젖 일부(호분층)와 배아, 겨층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료로 쓰임.
2. 볏짚 원형 곤포 사일리지. 볏짚을 둥글게 말아 압축하여 비닐로 포장한 것으로, 소의 먹이가 됨.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군은 ♣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내용을 결정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구입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별 지원내용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추진 과정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상의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수립한 「♣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는 세금계산서, 농가 배부확인서, 구입완료 사진 등이 첨부된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사료 구입 및 농가별 배부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군은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구입 관련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사료 구입 및 농가별 배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 증빙서류는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이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사업자인 ♣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구입 증빙자료 중 일부가 아래 [표 3]과 같이 미비함에도 보완이나 시정과 같은 적정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3] 정산서류 증빙 부적정 내역

사업명	연도	구입처	지원 금액 (천원)	증빙서류					비고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농가공급 (배분)내역	농가별 배부확인 (서명,날인)	구입 사진	
발효사료 자재 지원사업	2019	♤ (♠)	80,000	○	○	○	X	X	▪ 1~20차 구입
	2020	♡ (♥)	80,000	○	○	○	X	X	▪ 1~17차 구입
	2021	♧ (♣)	80,000	○	○	○	X	X	▪ 1~8차 구입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2019	양산◈	15,680	○	○	○	X	○	-
	2020	양산◈	17,520	○	○	○	X	○	▪ 1 ,2차 구입분
		*** *** ***	1,600	X	○	X	X	○	▪ 3차 구입분 ▪ 160롤 운반비(화물) 수기 세금계산서 첨부
	2021	양산◈	16,860	○	○	○	X	○	-
		***	2,320	X	○	○	X	○	▪ 볏짚공급확인서 첨부 ▪ 232롤 운반비(화물) 수기 세금계산서 첨부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발효사료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농가별 배분 내역(성명, 수량)과 전자계산서, 구매대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농가별 적정 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농가별 서명 또는 날인)와 구입 완료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농가별 적정 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명 또는 날인)가 미첨부되어 있었고, 2020년 *** 외 2인에게 구입한 조사료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구입처별 구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내역이 미첨부되었으며, 2021년에는 ***에게 구입한 조사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볏짚공급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군은 ♣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때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구입 내역 및 사진, 농가별 배분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실제 사료를 구입하여 농가에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시정 또는 보완 조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 농가에서 사료자재 등을 적절히 배부받았음을 확인(농가별 서명)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앞으로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별 배부 서류와 구입 사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발효사료자재 및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추진 시, ♣♣♣에 사료 구입 내역과 농가별 배부 확인을 명확히 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는 산지 저장을 통한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안정 기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광역시 ♠과(이하 “시 ♠과”라 한다)로부터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래 [표 1]과 같이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비				지원 건수
			합계	시비(25%)	구비(25%)	자부담(50%)	
2019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48,600	12,150	12,150	24,300	8건
2020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48,600	12,150	12,150	24,300	7건

주: 채소류 및 곡류 등 농산물 소형 저온 또는 냉동 저장고 설치비용의 50% 지원 ▹ 지원한도 3,000천원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구는 시 ♠과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채소류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는 현장 확인과 더불어 보조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지방재정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시 ♠과 사업지침을 근거로 ◈◈구에서 수립한 2019년, 2020년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며,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현황을 기록·유지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변동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과)는 아래 [표 3]와 같이 2019년, 2020년 사업추진으로 설치 지원한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15개소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요재산의 취득·변동현황 또한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미실시,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미공시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로 보조사업자의 중요

재산을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및 관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채소류 저온저장고 사후점검 미실시 및 미공시 내역

(단위: 원)

연도	성명	사업대상지	사업내역	사업비			보조금 지급액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2019 (8건)	***	**동 **	저온저장고 1식	6,000,000	3,000,000	3,000,000	2,727,273	
	***	**동 **	저온저장고 1식	6,000,000	3,000,000	3,000,000	2,727,273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3,000,000	환급금 재투자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727,273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727,273	
	***	**동 **	저온저장고 1식	6,400,000	3,000,000	3,400,000	3,000,000	환급금 재투자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3,000,000	환급금 재투자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3,000,000	환급금 재투자
2020 (7건)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727,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727,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000,000	3,000,000	3,000,000	2,272,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272,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000,000	3,000,000	3,000,000	2,272,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000,000	3,000,000	3,000,000	2,272,280	
	***	**동 **	저온저장고 1식	6,600,000	3,000,000	3,600,000	2,272,280	

자료: ◈◈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청장은**

①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공시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